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차현숙·최 유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A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Index

연구책임자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Cha, Hyun-sook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Choi, You

2018. 11. 15.

연 구 진

연구책임	차현숙 연구위원 최 유 연구위원
심의위원	이상윤 연구위원 김명아 연구위원 황승흠 교수(국민대학교)
연구보조원	이상현 연구원 이현정 연구원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 법의식조사의 연혁

-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을 시작으로 1994년, 2008년,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를 실시함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임.
 - 연혁적으로 1960년대 서울대학교 함병춘 교수의 연구를 시작으로 국민법의식조사가 시작되어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는 후속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
 - 전통적인 인식과 서양계수법 사이의 차이를 조사하여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 조사의 목적임.

▶ 국민법의식조사 지표개발의 필요성

- 주기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
 - 2015년 이후 국민법의식조사는 시행되지 않음.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의 수행하기 적합한 기초적인 법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법치주의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이며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함.

- 기존 설문들이 과거의 조사를 답습해 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와 설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 법치주의 설문과의 비교

- 국제적으로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에서도 국가별로 법치주의 지수를 발표하기도 함
 - 이러한 지수를 참고하여 우리의 법의식 지표를 마련하여 법치주의 수준을 파악해 봄.
 - 한국형 법치주의 지표를 마련하여 우리 법치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II. 주요 내용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에 대한 연혁적 분석

- 기존 조사의 법의식지표 비교
- 법치주의 관련 설문 분석

▶ 기존 법의식조사 설문에 대한 검토

- 설문의 목적 설정
 - 법의식조사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차년도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설문의 목적설정과 관련한 기초적인 제안을 함.

○ 설문의 문제점 분석

- 설문 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설문문항에 개념이나 가치를 포함하는 사항을 선택지로 주는 경우 분석에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점, 하나의 질문지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넣어 구성되었던 설문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설문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설문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오래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설문 방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시계열적 분석이라는 분석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을 제시함.

▶ 외국 법치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

- 미국 세계사법프로젝트(WJP)의 법의 지배 지수의 분석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제도조사 지표의 분석

▶ 법의식조사와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 기초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법의 본질, 법에 대한 정서, 법의 목적/기능, 법에 대한 인식경로/관심, 법과 정의, 법에 대한 이해/교육, 법생활,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법적 현안 등의 지표를 설계
- 법치주의 지표로서 기본권 보호, 국회와 정부의 권한통제, 사법부의 독립 및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법준수라는 지표를 마련

▶ **법의식조사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마련**

- 국정과제 수행은 정책과 제도설계와 집행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시행될 법의식조사의 지표 및 설문지 준비에 기여
- 법의식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로서 법학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의 활용 방안 제시
-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국정과제 성과 확인 및 민의에 기반한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기초 자료의 제공

- ▶ **주제어 : 법의식조사, 세계사법프로젝트(WJP),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CR), 법치주의, 법의 지배**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History of Korean Legal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 KLRI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ince 1991, followed by researches in 1994, 2008, and 2015
 -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tudies the people's perceptions toward the law
 - Historically, the research started in the 1960's by Professor Ham Byun Cho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LRI's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can be considered as a follow-up research
 -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status quo of our nation's constitutionalism by studying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perceptions and Westernized laws

▶ Need to develop an index for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 Need for a periodic and systematic research
 -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has not been conducted since 2015
 - The research can provide basic legal reference f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 A systematic and periodic research is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legalism
- A new index and survey which break away from the tendency to follow past researches is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legalism

▶ Comparison to foreign survey on legalism

- Internationally,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 organizations have presented legalism indexes by nation
- A legal consciousness index to understand the level of legalism should be prepared in reference to these indexes
- A legalism index should be prepared to seek directions for developing legalism in our nation

II. Major Content

▶ Historical analysis of KLRI's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 Compares existing legal consciousness indexes
- Analyzes surveys on legalism

▶ Review of past surveys on legal consciousness

- Establishment of survey goals
 -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etting clear goals in deciding the directions for the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this research gives basic suggestions on establishment of research and survey goals for future researches
- Analysis of survey issues
 - Analyzes and proposes issues of survey formality. The issues include the issue incorporating concepts and values in survey answer choices which may bring confusion in analysis, and the issue of including two or more questions in one questionnaire
 - Analyzes and proposes issues of survey content. The issues include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e survey are outdated
 - Analyzes and proposes issues of survey method. Through expert consultation, suggestions were made 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method of time series analysis

▶ Research and analysis on foreign legalism indexes

- Analyzes the Rule of Law Index from the US World Justice Project (WJP)
- Analyzes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from World Economic Forum (WEF) report

▶ **Composition of legal consciousness and rule of law index**

- Design indicators such as the nature of the law, the emotion of the law, the purpose/function of the law, the recognition path/view of the law, the understanding/education of the law, the life of the law, and the change of the social values, etc.
- Protection of basic rights, control of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compliance with laws by individuals, society and the state are designed as law-abiding indicators.

▶ **Establishment of link between legal consciousness research and national affairs**

- National affairs performance is consisted of drafting and enforcement
- Research is conducted on people's perceptions on the legal system of major national affairs

III. Expected Effects

- Contributes to preparing index and survey for future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 As a methodological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suggests ways to utilize social scientific methods in legal studies

- Through a consciousness research on legal system related to national affairs, provides basic legal reference to help check performance of national affairs and to design policies based on public consensus

- ▶ **Key Words** : Legal consciousness research, World Justice Project(WJP),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GCR), Legalism, Rule of law

요 약 문	3
Abstract	7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I. 연구의 필요성	17
II.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방법	19
제3절 기대효과	22

제2장 범의식조사 개관(선행연구분석을 중심으로) / 23

제1절 한국법제연구원 이외의 범의식조사 개관	25
제2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범의식조사	29
I. 한국법제연구원의 범의식조사 연혁	29
II. 1991년과 1994년 설문조사	34
III. 2001년 설문조사	37
IV. 2015년 국민범의식조사	42
V. 소 결	45

제3장 국민범의식조사의 목표 및 지표 설계의 방향 / 47

제1절 설문조사 목적 개발	49
I. 설문목적으로서의 ‘선진적인 법치주의’의 설정	49
제2절 범의식지표의 구성	53
I. 범의식지표의 설계 과정	53
II. 범의식지표의 변화	54
III. 범의식지표의 설계의 일반원칙	56

제4장 법의식지표와 예비설문 검토 / 63

제1절 법의식조사와 법의식지표 설계의 방향	65
제2절 외국의 법치주의 지표	67
I. 세계사법프로젝트의 법의 지배 지표	67
II.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규제제도 지수	72
제3절 법의식지표의 구상과 내용	84
I. 법의식 지표의 세분화	84
II.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88
III. 각 지표에 따른 설문 구성	90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5
부 록 - 설문조사문항 관리카드	13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연구의 필요성

국민이 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추상적인 추론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는 문제로,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반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에 기대어 법령을 만들고 집행할 때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1991년, 1994년, 2008년, 2015년에 국민법의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기존의 법의식조사는 조사 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비정기적인 조사였고, 조사 시기별로 질문지가 상이하여 비교·분석이 어려운 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조사의 목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주기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이유의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질문지를 개발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법의식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의식조사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의 법의식 변화를 누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의식 지표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의식조사 자료의 누적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2019년 이후 매 홀수 해에는 국민법의식조사를, 매 짝수 해에는 법전문가 법의식조사를 수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차년도에 수행될 국민법의식조사를 위하여 2018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법의식조사 및 연구의 기반이 되는 법의식 지표 개발을 선행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법의식조사의 체계적인 수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법의식조사는 향후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 즉, 우리의 법률 수준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국가정책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해외의 국제기구 등에서 조사하는 법치주의 지수를 비교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법치주의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법의식조사에 반영하여 한국의 법률 수준을 높이고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II.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법의식조사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연구로서 법의식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법의식조사의 체계적인 수행에 필요한 법의식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대상 사전조사 및 예비연구를 통하여 법의식지표를 개발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또한 해외에서 활용되는 법치주의 지수를 분석하여 이를 법의식 지표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후 확정된 법의식지표를 기반으로 2019년에 수행예정인 국민법의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법의식조사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사전 연구로서 진행되는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기존의 법의식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일반 이론을 기반으로 법의식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기존의 법의식조사의 지표와 설문을 살펴본다.

특히 법의식조사의 목표를 설정한 후 기존의 법의식조사 및 법치주의 지수 등 유사 지표를 분석하고, 기존의 법의식조사의 질문 문항을 분석하여 문항을 추출하고 필요한 신규 문항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표적집단인터뷰(FGI)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

전문가자문은 2018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의 10일 동안에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한국 법제연구원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연구진이 1차 분석하여 만든 질문지를 활용하여 질문지에 문제점을 체크하거나 의견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받았다. 법제 분야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진행된 전문가자문에서 24명의 전문가가 응답을 주었다.

전문가자문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1] 전문가자문 개요(2018년 8월 8일~2018년 8월 17일)

선행연구 개별 질문지에 대한 의견 수렴
<p>전문가자문의 이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법의식설문조사의 준비단계로써 과거에 진행하였던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내용이나 항목을 수정할 예정임 - 질문지와 관련된 예시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함 - 개별 질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크하도록 하여 질문지 자체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향후 질문지 활용 및 재검토시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함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	√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	√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	의견	(예시) 응답자가 문항에서 그냥 3번을 체크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정이 필요해 보임.
선행연구 관련 자문			
- 과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였던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설문지 전반 및 개별 질문이나 보기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자문의견 요청			
신규 개발 질문지 방향성 관련 자문			
- 2018년도 법제 관련 주요 키워드 예시를 제시하고 2019년도 설문조사시 반영이 필요한 새로운 문항에 관한 자문의견 요청			

위와 같은 전문가자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문가 표적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표적집단인터뷰는 2018년 8월 24일 2시~6시에 3인의 법의식조사 관련 전문가(법사회학 전공 및 연구 실적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날의 표적집단인터뷰는 이 연구의 진행 방향성에 대한 의견 및 응답을 한 24인 전문가의 의견을 1차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I-2] 전문가 표적집단인터뷰(FGI) (2018년 8월 24일)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사회학 전공으로 범의식조사 또는 의견조사 관련 경험 및 저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3인 - 한국법제연구원 원내 연구진
주요 내용
<p>설문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설문지의 구성에 관한 문제점 - 설문 전체 체계의 수정 필요사항 <p>설문 문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문항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 신규 문항 개발의 방식 <p>종합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정 필요 - 조사의 목적을 결정하고 설문의 체계적 부분을 고민해야 함

이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문의 내용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전문가 조사결과는 부록으로 제시한다.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및 2019년 범의식조사의 목표 설정에 따른 설문문항 개발을 기반으로 예비지표와 설문을 예시적으로 작성하여 2019년 국민범의식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2장의 연혁적 조사는 차현숙이 집필하였으며, 제3장의 분석적 조사는 최유가, 그리고 제1장 서론과 제4장의 예비적인 지표와 설문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제3절 기대효과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기반으로 2019년 이후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법의식 조사가 체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계적인 법의식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입법정책 수립시 민의(民意)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의에 기반한 입법정책 수립을 통하여 보다 수용성이 높은 입법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규범에 대한 순응도도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곧 법치주의의 정착 나아가 법치주의의 발전으로 향하는 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성의 확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방식이 입법과정에서 존재해왔다. 법의식조사도 그와 같은 민의의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법치주의의 정착 정도를 확인하고 발전시켜 가는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2장

법의식조사 개관

● (선행연구분석을 중심으로)

제1절 한국법제연구원 이외의 법의식조사 개관

제2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제2장

법의식조사 개관 (선행연구분석을 중심으로)

제1절 한국법제연구원 이외의 법의식조사 개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1991년 법의식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도 개인 연구자들의 법의식조사는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법의식조사는 1960년대에 진행되었다. 함병춘 교수와 양승두 교수가 진행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의식조사였으며, 1963년 12월부터 1964년 6월까지의 7개월의 기간 동안 1,3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다.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근대화과정에서의 전통적인 법의식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었다. 이후 진행된 법의식조사들(법의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 포함)은 많은 수가 1963년에 수행되었던 첫 번째 법의식조사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2000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조사는 “범국민 준법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로서 수행되었다고 한다. 각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번	연구자	조사 시기	조사 기간	대상자	표본수	표본추출방식	조사방법	조사결과	특징
1	함병춘, 양승두	1963.12~1964.6	7개월	대통령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20세 이상의 국민(63.10.15 기준)	1301	도시, 농촌 계층별 무작위 표본 추출	면접조사	-유교적 전통에 따라 법보다는 윤리규범을 소중하게 생각 -법적 권리의 존중과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의식이 박약 -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제정한 것	-사실상 최초의 법의식조사 -근대화과정에서의 전통적 법의식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의 규명이 목적
2	임희섭	1972.2~1972.5	4개월	전국표본, 대학생표본, 법률직 종사 표본의 3개 집단에 대해서 실시(주민등록표에서 만 18세 이상의 남녀)	1993	전국표본: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로 층화한 다음 서울을 대도시 표본지역으로 임의 추출, 중소도시, 읍·면, 농촌의 표본은 경복과 진북으로 제한하여 계통적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	면접조사	-법의 도덕성, 정치성이 사회성보다 중요시되고, 법의 형법적, 징벌적 측면과 통제기능이 강조됨 -법적 소외감이 상당히 높고 법의 타당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 -법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로 인해 법 사용능력이 비교적 낮음	-사회과학의 태도(attitude) 개념을 사용하여 법의식조사를 하였음 -한국인의 범행등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함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틀에서 법의식을 분석
3	양승두	1979	-	연세대학교 야간 직업대학원 학생	291	1960년대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	면접조사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의식 사이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음	-표본의 수가 작아서 독립된 의미를 갖는 조사라고 보기 어려움 -전통적인 법의식의 변화를 살펴봄
4	이근식, 손주찬, 양승두, 이형국	1981.10	-	일반국민 96명과 대학생 171명	-	-	면접조사	-우리나라 국민의 준범의식 결여 원인을 전통적인 법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음	-표본의 수가 작아서 독립된 의미를 갖는 조사라고 보기 어려움 -법의식조사에서 '준범정산'을 거론한 연구

연번	연구자	조사 시기	조사 기간	대상자	표본수	표본추출방식	조사방법	조사결과	특징
5	차용석, 최종일, 장대주	1989	-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수도권에서 450명, 지방거점도시에서 200명, 공단배후도시에서 150명, 농촌지역에서 100명, 어촌지역에서 100명을 조사	987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각 대상지역에서 예정된 인원을 무작위로 추출	면접조사	-자연법시상의 부재와 과도한 외래문물수입으로 사회적 해체현상에 수반되는 가치관의 혼란 -전통적 법의식이 사라짐 -교육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권리의식이 강화되었음	-법이라는 단어에 대한 연상이나 정서 등과 같은 일반론적·추상적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 -법문화의 보급을 파악하고자하는 시도
6	연성진 (한국행사정책연구원)	2000	-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의 20세 이상의 남녀	1230	2000년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다단계 집락표집방법	-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 -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법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 -법집행의 정당성과 부정적 평가와 함께 법집행기관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 -다만 법이나 법집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대다수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정부에서 추진한 “법국민 준법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로서 순수한 법의식 조사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7	전택수 외 6인	2004.1, 2004.3~2004.4	1개월, (+2개월의 보완 조사)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1,000명 (+경제관료, 시민단체, 학술연구자 등 전문가 73명)	1000, (+73)	-	일대일 개별방문 면접조사	-법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법집행기관과 입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국회의원에 대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임	-재판경험 유무에 따라 법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결과를 제시 -유경험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응답

연번	연구자	조사 시기	조사 기간	대상자	표본수	표본추출방식	조사방법	조사결과	특징
8	김해성 (지표개발 및 예비조사)	2007.3~ 2007.11	8개월	2007년 7월에 서울과 춘천의 8개 중·고등학교 학생들(강원사대부고, 강원중, 봉의여중, 봉의고, 둔촌고, 둔촌중, 거원중, 금천고)	664	영역별로 예비문항을 개발하여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답변 수집 및 통계 분석	설문조사	-법 지식에 대한 자기판단, 법 인지수 준, 법 신뢰도 등의 문항과 독립변수 로 비행친구 변인,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의 문항을 통해 상관관계를 밝혀 청소년 대상 법교육의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음	-영역별로 변인들과의 관계 로 통계분석을 진행하여 설 명력이 높은 변수를 활용하 여 지표문항 개발 -법의식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 한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영 향력을 확인
9	법무부, 국정 홍보처	2007.9~ 2007.10	2개월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서울, 인천, 경기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일반 국민, 청소년 각 1,000	일반국민: 지역, 성, 연령별 인구 구성에 근거한 비례 할당추출 청소년: 지역, 학년, 성별 학생 구성에 근거한 비례 할당추출	일반국민: 면접 청소년: 설문조사	-추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 식 제고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에 활용할 영역별, 문항별 설문 진행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 전 국적 단위의 조사를 진행

* 이 표는 법무부·국정홍보처,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연구』(조사연구: 월드리서치), 2007.11.
임희성, 『한국인의 법의식에 한 사회학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제1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4.
양승두, 『한국법문화사론』(Ⅲ): Ⅱ. 한국의 역사 단과 법문화(2), 『법학연구』제1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이근식·손주찬·양승두·이형국, 『한국인의 법의식과 범정서의 제고방안에 한 연구 -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 『새마을운동 연구 논총』, 새마을연구회, 1982.
차용석·최종일·장주,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범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제6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전택수 외 6인, 『신진경제 진입과 범죄원리 확립 - 이상과 실』, 백산서당, 2005.
연성진, 『법의식의 실태 범운동의 개선방향에 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연성진, 『법질서 확립을 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법무연수원, 2008.
황승홍, 『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법학논총』제22권 제2호, 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제2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I.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연혁

연번	연구자	조사 시기	조사 기간	대상자	표본수	표본추출방식	조사 방법	조사결과	특징
1	박상철	1991.4.22~ 1991.4.28	7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00	전국을 서울특별시, 5개 직할시 및 9개도(제주도 포함)로 구분하고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표본 추출 (1991.2.28.에 집계된 전국 인구가비례에 따름)	면접 조사, 자기 기입 조사	-기존조사(1965·1972·1981년)보다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권리의식 신장 -준법정신 부재 및 범정립·법집행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법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가진 자는 전체 응답자 중 56.7%를 차지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법의식 조사
2	박상철	1994.4.1~ 1994.4.10	10일	전국 20세 이상의 남녀	1,200	전국을 6개의 특별·직할시와 8개도로 나누어(제주도 제외) 구분하고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표본 추출(경제기획원의 「한국 행정구역분류」에 근거)	면접 조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에 있어서 법기능의 다양화 조짐과 법의 유용한 가치에 대한 인정 -탈법행위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해진 태도 -국민들의 자기중심적 권리의식이 성장함 -법의 규범력 강화와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법보다는 지키기 쉬운 법에 정 초구	-법치주의의 구현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함
3	박영도· 최성근· 손희두	2001.4.9~ 2001.4.20	12일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정부 및 공공기관, 변호사 등 법률관련 업종 및	2,000	다단층화 무작위 추출	개별 방문 면접 조사	-법률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긍정적 견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등 상위법규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전자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식조사를 진행

연번	연구자	조사 시기	조사 기간	대상자	표본수	표본추출방식	조사 방법	조사결과	특징
4	이세정·이상운	2008.4.30~2008.5.30	31일	기관 근무자 제외)	3,000	2007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근거	개별 방문 면접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에 대한 인상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전 조사와 달리 법준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여 본인과 타인의 준법수준 평가에 대해 이중적 잣대가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용어 이해도에 대한 설문은 통해 향후 진행 될 『법률용어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의 적합성 유지 -법의식이 개인주의를 넘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으로 변화하는 시
5	함태호·김명아	2015.5.28~2015.6.27	31일	전국(제주 포함)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 집락추출법	개별 방문 면접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에 대해 권위적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60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는 법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률관련 정보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시계열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법제도의 시계열 분석과 이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 변화를 고찰하는 성과 도출 -국민법의식 지표와 지수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국민의의식을 분석하고 차원별, 항목별 국가법제도의 개선 전략을 제시

* 이 표는 박상철 외 2인,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박영도·최성환·손희두,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1.

이세정·이상운,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함태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과 1994년에 국민법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1991년 국민법의식조사는 1964년도에 수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병춘·양승두 교수의 국민법의식 조사의 문제의식을 이어서 진행한 것이었다. 즉, 전통적인 의식구조와 서양식 계수법 사이의 간극을 배경으로 국민들이 갖는 법에 대한 정서와 인식 그리고 법적 행동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국민법의식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94년의 조사는 1991년 조사의 뒤를 이은 것으로 시계열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법의식조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국민법의식을 조사한다는 시대적 배경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의 조사는 14년 후인 2008년에 이루어졌다. 2008년에 법의식조사는 당시 신정부 출범을 맞아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이유로 진행되었다. 이후 7년 후인 2015년에 국민법의식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국민법의식조사를 향후에는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그 동안의 국민법의식조사에 관한 내용을 회고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실시할 국민법의식조사의 방법론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이전 설문에서는 지표와 설문의 개발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지 않았었다. 2015년 연구에서 비로소 설문지표 개발 배경 및 과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 연구는 2019년에 실시될 국민법의식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설문목적 및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과 2008년 설문은 1991년 설문을 일부 수정한 형태로 실시되었다. 2015년에는 설문의 구성과 형식에 변화를 주었다. 2015년 이후에 다시 국민법의식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법의식조사의 주기적 연속성은 갖지 못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러 있다.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인 추론에 기대어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인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법령을 만들고

집행할 때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법의식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법의식조사의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는 설문문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법의식조사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와는 다른 시대적 환경과 변화 속에서 현재의 법치주의 수준을 확인하고 진단하기 위한 설문문의 목표와 지표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각 개별적인 설문내용이 갖고 있는 의의를 현재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다시금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설문내용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1991년, 1994년, 2008년, 2015년에 걸친 간헐적인 국민법의식조사는 조사의 주기(週期)가 일정하지 않았고, 조사 시기별로 질문지에 대한 이해와 의미가 상의하였으며 조사·분석을 담당하는 연구진의 변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시계열 분석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계열분석 자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시계열분석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논의도 다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1991년, 1994년, 2008년, 2015년에 걸친 간헐적인 국민법의식조사에서 시계열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기존의 설문문항의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법의식조사의 문항이 국민의 법의식이 약 3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서 첫 단추부터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되었던 네 번의 국민법의식조사 설문문의 개요이다. 전문가법의식조사에 관한 내용은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아니하므로 국민법의식조사에 관한 사항만 추려 정리한 것이다.

[표 II-1]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 설문개요 연혁

연도	제목	비 고
1991	국민법의식조사연구 -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 진단 -	총 40문항 -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 - 가정생활 및 사회현상 - 법생활 - 국회·행정기관·법원·검찰·경찰 등에 대한 의견 -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1994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총 40문항 - 91년 조사와 동일함
2001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총 28문항 - 법률문화 인식 - 법률용어의 이해도 - 법률문장의 이해도 - 법률용어 및 문장에 대한 만족도 - 정부의 법률용어 정비사업 - 정부의 법률용어 정비사업 개선방향
2008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총 43문항 (추가문항 포함 52개 문항) -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법생활 -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 현행 법제에 대한 의견
2015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총 50문항 (일반설문 20개, 항목구별 설문 30개) - 가치관 인식 - 법 관련 현안 - 법에 대한 관심 - 법에 대한 인식/정서 - 법에 대한 준수 -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 법의 실효성 보장 - 법의 제정/집행

II. 1991년과 1994년 설문조사

최초의 법의식조사는 1991년에 이루어졌다. 1991년에 수행된 법의식조사는 사회변동과 법의식,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국민의 법생활,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의 세부적인 목차는 아래와 같다.

1991년 “국민법의식조사연구” ¹⁾ 보고서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2.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과정 2) 조사의 한계 II. 법의식과 법치주의 1. 법의식의 개념규정 1) 광의설 2) 협의설 3) 본 연구의 입장 2. 법치주의와 법의식의 관계 III. 사회변동과 법의식의 관계 1.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1) 가족구조의 변화 2) 직장질서 3) 여성의 지위 2. 법의식의 변화 1)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2) 준법정신의 결여와 권리의식의 신장 3)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심화 IV.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V. 국민의 법생활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1) 법인지경로 2) 법인지욕구 3) 법적 경험 4) 법지식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1) 준법정신 2) 고발정신 3) 권리의식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1) 법의 사용능력 2) 분쟁의 해결방법 VI.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1.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2. 사법권의 독립 VII.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2.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3.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제약 VIII. 결론

1991년 “국민법의식조사연구” ¹⁾ 보고서 목차	
1. 법에 대한 인상	1. 요약 및 제언
2. 법규범력의 좌표와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2. 새로운 영역의 조사

3년 후인 1994년에 법의식조사에서는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관계,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국민의 법생활,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보고서에는 1991년 조사와의 비교를 담고 있다. 1994년 보고서의 세부적인 목차는 아래와 같다.

1994년 “‘94국민법의식조사연구 ²⁾ ” 보고서 목차	
<p>I. 서론</p> <p>1. 법의식과 법치주의</p> <p>1) 법의식조사연구의 목적</p> <p>2) 법의식과 법치주의의 관계</p> <p>2. '94국민법의식조사의 내용·방법·과정</p> <p>1) 조사의 내용</p> <p>2) 조사의 방법 및 과정</p> <p>3) 조사의 한계</p> <p>3. 국민법의식조사의 확장방향</p> <p>1) 특정법령에 대한 국민의 대응조사</p> <p>2) 법관계자의 법의식 및 입법의견조사</p> <p>3) 주요 법령 제정시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사전여론조사</p> <p>II. 한국인의 법의식과 그 특징</p> <p>1. 91국민법의식조사와의 비교</p> <p>1) 가치관 변화의 비교</p> <p>2)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의 비교</p> <p>3) 국민의 법생활 비교</p>	<p>V. 국민의 법생활</p> <p>1. 법생활과 법적 경험</p> <p>1) 법인지경로</p> <p>2) 법인지욕구</p> <p>3) 법교육</p> <p>4) 법적 경험</p> <p>5) 법지식</p> <p>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p> <p>1) 준법정신</p> <p>2) 고발정신</p> <p>3) 권리의식</p> <p>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p> <p>1) 법의 사용능력</p> <p>2) 분쟁의 해결방법</p> <p>VI.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p> <p>1.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p> <p>2. 사법권의 독립</p>

1) 박상철 외 2인,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i 면부터 iii 면.

1994년 “‘94국민법의식조사연구2)” 보고서 목차	
4)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의 비교 5)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의 비교 2. 외국의 법의식조사와의 비교 3. 한국인 법의식의 특징 III.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관계 IV.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1. 법에 대한 인상 2. 법규범력의 좌표와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VII.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2. 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 3.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4.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VIII. 결론 : 종합적 평가

아래는 1991년의 조사와 1994년의 법의식조사의 질문지 구성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1991년과 비교하여 1994년의 법의식조사에서는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대우와 관련한 설문을 자세하게 규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1991년도의 설문에서는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중에서 가장 그렇다고 하는 경우를 고르는 항목이 있었는데, 정치참여, 재산 상속, 취업 및 승진, 가정에서의 역할, 기타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으나, 1994년 항목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동시에 1991년도와 동일한 항목으로 구분한 질문을 하였다.

1994년도의 조사에서는 가정생활 및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1991년에 조사된 질문인 수박서리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고, 아이가 이웃의 아이와 다투다 상처를 입을 경우에 대한 법적처리방안에 대하여 경찰신고, 치료비 요구, 문제삼지 않는다를 답변으로 넣어 질문하였다.

1991년도에 포함되어 있었던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경우에 대한 설문을 삭제하고 그 문항에 금융실명제 이후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을 질문하였다. 1991년도 설문 중 가장 시급하게 퇴치하여야 범죄유형에 관한 설문에 덧붙여서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서 가장 시급

2)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i 면부터 iii 면.

하게 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선택지로 “철저한 신고정신, 신고자 보호,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건전한 시민교육,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기타”를 제시하였다).

1991년 설문 중에서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 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그 유형을 묻는 질문을 삭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법교육과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으로 대체하였다(선택지로 “권리의무와 국가조직 등의 지식, 생활법규, 능력향상, 인간상 정립, 기타”를 제시하였다).

1991년 설문 중에서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있는 분야를 고르라는 질문을 삭제하고, 정치개혁법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으로 대체하였다(준법의식, 엄격한 법집행, 유권자의 의식과 고발정신, 기타).

1991년 설문 중에서 차량 10부제와 관련된 설문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설문으로 대체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1994년도의 설문은 1991년 설문의 내용을 유지한 채, 4개의 설문항목을 새로운 설문문항으로 대체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시계열비교라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2001년 설문조사

2001년에는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의 조사는 법의식조사와는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지만, 법인식 조사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아래는 2001년 설문조사의 세부적인 목차이다.

2001년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조사” ³⁾ 보고서 목차	
제1장 조사 개요	4) ‘瑕疵(하자)’의 의미 이해도
1. 조사의 목적	5) 일본어투 법률용어 사용에 대한 견해
2. 조사의 내용	3. 법률문장 이해도
3. 조사의 방법	1) 법률문장 이해의 용이성

2001년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조사” ³⁾ 보고서 목차	
4. 응답자 특성	2) 법률문장 어법에 대한 평가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3) 한글/한자의 문장 구성에 대한 견해
제3장 주요 조사 결과	4. 법률용어 및 문장에 대한 만족도
제4장 조사결과 분석	1) 법률용어 및 문장에 대한 만족도 종합 분석
1. 법률문화에 대한 인식	2) 법률용어 및 문장에 대한 만족도
1) 법률정보의 필요성	3) 법률용어 및 문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 법률기사에 대한 관심도	5. 정부의 법률용어 정비사업
3) 법령에 대한 인지도	1) 법률용어 정비사업에 대한 인지도
4) 약관 검토 정도	2) 법률의 제·개정시 한글전용 방침에 대한 인지도
5) 법적 문제 발생을 전제한 계약서 검토 정도	3) 한글전용 방침의 법률이해 도움 정도
6) 법률서류 작성 경험	6. 법률용어 정비사업의 개선 방향
7) 법률정보의 정보원천(중복응답)	1) 법률 정비시 기준 학력
8) 법률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2) 한글/한자의 문장구성에 대한 견해
9) 가장 관심있는 법률(중복응답)	3) 법률명 표기방법에 대한 견해
10) 전자거래 관련 법률문제	4) 일반국민들의 법률용어 및 문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
2. 법률용어 이해도	5) 일반국민들의 법률용어 및 문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
1) 법률용어 이해의 용이성	
2) 한자에 대한 이해도	
3) 전세/임대차에 대한 이해도	
	제5장 결론

2001년의 조사는 법률용어나 문장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 그리고 정부의 법률용어 정비사업에 대하여 묻는 설문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확인하고 향후 법령정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⁴⁾

3) 박영도·최성근·손희두,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1, i 면부터 ii 면.

4) 박영도·최성근·손희두,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1, 4면.

2008년 국민법의식조사 설문은 1991년과 1994년의 설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설문을 바꾸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국민의 법생활,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현행 법제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법의식조사가 진행되었다. 2008년 국민법의식조사의 세부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2008년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⁵⁾ 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4.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법교육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1. 연구의 내용	7. 법지식 수준
2. 연구의 방법	
제2장 법의식의 개념 정의 및 법의식조사연구의 연혁	III.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I. 법의식의 개념 정의	1. 개관
1. 문제의 소재	2.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
2. 법의식의 개념적 다양성	3. 법준수 자가진단 및 자신의 비준수 이유
3. 유사개념과의 구분	4.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유형
4. 이 연구에서의 법의식 개념	5.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
II. 법의식조사연구의 연혁	6. 권리의식
1. 1990년 이전	제6장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2. 1990년대 이후	I. 개관
3. 기존의 법의식조사연구 결과의 특징	II. 권력·재력·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1.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2.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III. 로스쿨 제도
I. 개관	1. 로스쿨 제도의 인지도
II.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2. 로스쿨 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III. 여성의 법적 지위	IV. 국민참여재판제도
1. 여성의 법률상 대우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도
2.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시행방안
IV. 병역을 마친 남성의 법적 권리	
V.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타인종·민족에 대한 포용 여부	제7장 현행 법제도에 대한 태도
	I. 현실에 맞지 않는 법

2008년 “2008 국민법 의식 조사연구” ⁵⁾ 보고서 목차	
제4장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1. 인터넷 실명제 필요성
I. 개관	2. 안락사 허용 여부
II. 법에 대한 인상	3. 사형제 존치여부
III. 법규범력의 좌표	II. 헌법에 대한 의견
1. 법의 필요 정도	1. 헌법에 대한 인상
2. 법이 필요한 이유	2. 헌법의 성격
3. 악법에 대한 인식	III. 정치관계법
IV.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유전무죄에 관한 의식)	1. 정치 투명화·선진화를 위한 개선점
제5장 국민의 법생활	2. 선거법 준수도 및 비준수 이유
I. 개관	IV.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II. 법생활과 법적 경험	1. 개관
1. 법인지경로	2. 노사관계법 준수도
(생활법을 관련 정보의 인지경로)	3. 노사관계법 비준수 집단
2. 법인지욕구	V. 환경오염의 규제방향(환경오염의 유발기업에 대한 규제)
3. 법적 경험	제8장 결론

2008년의 법의식조사는 기본적으로는 1991년과 1994년 설문 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설문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사회변동 항목의 순서를 바꾸어 진행되었다. 아래는 2008년의 법의식조사의 질문지를 1991년 및 1994년 조사의 질문지와 비교·분석한 것이다.

1994년도 설문 중 법에 대한 최초 느낌, 필요성, 필요한 이유, 악법도 법이다의 견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설문만 계승하였다.

사회변동과 관련해서는 가족공동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 여성의 불리한 대우만을 존치시키고, 군사산점 제도입논의,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설문을 새롭게 편입하여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5)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 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목차페이지.

법생활과 관련해서는 법이 잘 지켜지는 지와 그 이유에 관한 설문을 유지하면서, 누가 가장 법을 잘 지키지 않는가와 어느 분야에서 법이 잘 안 지켜지는 지에 대한 설문을 폐기하였다. 그 외에 본인이 법을 잘 지키는 지와 그 이유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였다.⁶⁾ 이는 국민의 개개인의 자신에 대한 의식과 외부에 대한 의식을 비교하여 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에 관한 설문과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 뺑소니 장면목격, 불량제품 구입,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목격설문은 유지하고, 금융실명제, 이웃집에 든 도둑을 보았을 때, 가족 중 한 사람을 때린 경우, 법과 관련된 일이 발생한 경우에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가장 도움이 되는 지에 관한 설문은 폐기하고, 집단따돌림에 대한 설문을 새롭게 구성하여 법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법률인식경로는 유지하고, 뉴스보도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판결로 변경하여 포함하였다. 법적 분쟁에 관한 전화 상담에 대한 설문을 확대해서 법률서비스 이용과 그 이용의 용이성과 그 이유에 관한 설문으로 변경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초·중·고에서의 법교육과 법교육시 중점사항에 대한 설문을 유지하고, 법교육의 실생활에서의 도움과 배우고 싶은 법학분야에 대한 설문을 추가로 구성하였다.⁷⁾ 생활을 하면서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인지에 관한 설문은 유지하였다.

법이해의 어려움과 그 이유,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법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국회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폐기하고, 로스쿨과 국민참여재판 등 사법개혁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정치관련 설문은 유지하고, 선거법에 준수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였으며, 노사관계법 및 환경오염에 대한 설문은 유지하였다.

헌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실명제, 안락사 허용, 사형제 폐지, 헌법의 기능, 강조점 등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6)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99면부터 204면.

7)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50면부터 168면.

기존의 조사에서 중요한 질문은 유지하면서 2008년 조사 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2015년 국민법외식조사

2015년의 국민법외식조사는 크게 사회변동과 국민법외식,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외식, 국민법외식 지표와 국민법외식으로 나누어 서술되었다. 세부적인 목차는 아래와 같다.

2015년 “2015 국민법외식조사연구” ⁸⁾ 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3절 현행 법제와 법외식 변화
제1절 연구의 목적	1. 사형제 폐지의 여부
제2절 설문 개발 및 조사방법	2. 안락사 허용의 여부
1. 설문 개발 및 재구성	3. 노사관계법의 준수 정도
2. 조사의 방법과 한계	4. 환경오염 유발기업 규제의 정도
제2장 사회변동과 국민법외식	5. 비정규직 보호의 성과
제1절 개관	6. 간통죄의 찬반 여부
제2절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7. 성매매종사자 처벌의 여부
1.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8. 김영란법 도입의 성과
2. 여성의 지위	제4장 국민법외식 지표와 국민법외식
3. 병역의무이행자의 지위	제1절 지표 개발 배경 및 과정
4. 사회적 약자의 지위	1. 국민법외식 지표 개발 배경
제3절 법생활과 법외식의 변화	2. 국민법외식 지표 개발 과정
1. 법에 대한 인식	제2절 전문가 가중치 산출 방법 및 적용
2. 생활에서의 법경험	1. 가중치 산정 방법
3. 법생활과 준법 정도	2. 지표 도출을 위한 가중치 산정 절차
4. 법생활과 권리의식	3. 중요도 산출 결과 예시 및 의의
제3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외식	제3절 국민법외식 지표 결과 분석
제1절 개관	1. 문항별 분석
제2절 사법개혁 관련제도의 도입과 법외식 변화	2. 차원별 분석
1. 로스쿨 제도	3. 종합분석
2. 국민참여재판제도	제5장 결론

2015년의 법의식조사의 경우 법의식지표 개발의 배경이나 과정 그리고 가중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중 처음으로 설문방향이나 이전 설문조사와의 차이점을 자료로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⁹⁾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국민법의식조사 설문구성 방향

- 2008년 국민법의식조사 설문의 보완점
 - : 설문개발 당시 일본의 설문을 참조
 - : 일본설문의 경우 “개인의 법사회심리”를 파악하는데 주력
 - : 2008년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사회문제나 법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설문
이 많아 현행 이슈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4점 척도로 중간척도가 없음
 - : 법치주의의 확산이라는 조사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개인적인 요소보다는 사회/국가
로 거시적인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국민의 법의식을 지속적으로 측정해 추이를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는 지표(Index) 방식의 설문도입이 필요함
 - : 국민의 법의식을 측정함에 있어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동일설문항목을 측정함으로써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 설문구성 방향
 - :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는 세 파트로 구성
 - : 2008년 비교 문항 - 법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문항으로 가급적 2008년 당시의 문항을 그대로 유지
 - : 2015년 현행이슈 문항 - 2015년 현 시점에서 법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나
법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어 봄(개발중)
 - : 지표문항 도입 - 기존에 연구되었거나 외국과의 비교가 가능한 검증된 문항들로 지표를
구성

8)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목차페이지.

9)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제3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7면. 2015. 4. 16,

○ 국민법외식지표 문항 설문구성

- : 선행연구를 검토해 유사 연구사례 중 법제처에서 발주해 강원대학교 김해성 교수 연구팀이 2007년에 수행한 “청소년 법외식지표 개발 연구”, 2008년에 수행한 “성인 법외식지표개발 연구”(이하 법외식) 사례를 참조함
- : 국제비교를 위해 World Justice Project(이하 WJP)가 99개국의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tracking해 오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검증된 Rule of Law Index(이하 ROL)를 참조함

이전의 설문에서의 항목분류는 단순화시켜서, 2008년 이전 자료와의 비교를 위한 항목과 이슈항목으로 분리하였으며, 지표조사를 위한 항목을 신설하여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에 대한 준수,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의 제정/집행 등의 주제로 4개에서 6개의 항목을 묶어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아래는 2015년의 조사와 이전의 조사에 있어서의 질문지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법에 대한 일반적 설문은 과거의 설문을 활용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설문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비정규직 보호의 성과, 간통죄의 찬반 여부, 성매매종사자 처벌의 여부, 청탁금지법 도입의 성과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지표항목으로서 법에 대한 관심은 법에 대한 인식적 측면에 관한 것이며,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는 법에 대한 이해나 의견반영, 권리보호, 차별적용, 법준수, 및 법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법에 대한 준수는 2008년에 삭제된 가장 잘 안지키는 기관에 대한 설문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은 신체의 자유, 이의제기나 청원권, 종교와 사상의 자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묶어서 규정하여, 어떤 기본권이 가장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표시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법의 실효성 보장은 실효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문지로 구성한 것이다. 일상생활과의 근접성, 분쟁과 범죄를 줄이는 기능, 부패방지, 정부권한의 통제 등이며, 법의 제정과 집행은 국회, 법원, 정부, 수사기관이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는지를 설문지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2008년에 삭제되었던 정부기관의 준법성에 대한 설문을 부활시킨 것이다.

V. 소 결

이상으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였던 법의식조사 연구의 변화된 내용과 조사 설계의 개괄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법에 대한 인식과 법 감정, 법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설문이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 중 일부 문항은 2019년에 수행예정인 국민법의식조사 연구에서도 활용 가능한 의미 있는 질문지로서 법의식조사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질문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질문지의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며, 조사에 있어서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지의 형식을 다듬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장

국민법의식조사의 목표 및 지표 설계의 방향

제1절 설문조사 목적 개발

제2절 법의식지표의 구성

제3장

국민법의식조사 목표 및 지표 설계의 방향

제1절 설문조사 목적 개발

I. 설문목적으로서의 ‘선진적인 법치주의’의 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조사를 관통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법치주의 정착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법의식조사는 전통사회 의식과 법률문화와의 격차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개별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 의식을 조사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판결 또는 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는 조사형식은 통상적인 여론조사 형태와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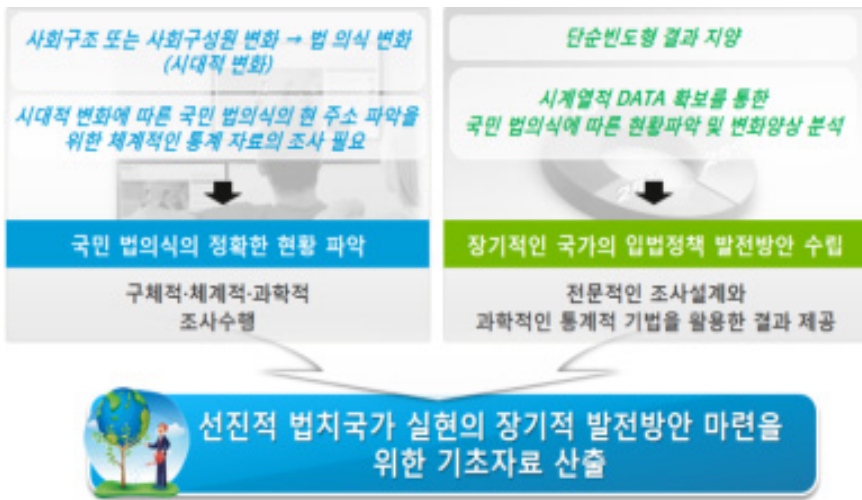
즉, 사회과학 조사의 일환으로서의 법의식조사는 본래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비해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문조사는 1994년에 설문 의 전통의식과 현실법문화의 괴리라는 약한 가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서, 회를 거듭하면서 일부 설문의 경우에는 그때(94년)부터의 질문들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의 설문들은 법현실과 맞지 않는 법률 또는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고 있어서 사실상 조사시점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현안 문제들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포함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장하여 왔다.

거듭되는 조사과정에서 그 때 그 때마다의 사회적 이슈들, ‘부정청탁방지법’ 또는 ‘로스쿨 개원’ 등과 함께, 법제처가 추진한 ‘알기 쉬운 법률용어개선’ 등의 정책적 과제들도

설문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국가간 비교단위로
서의 ‘법치주의적 요소’를 확인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을 갖는 복합적인 설문조사의 형태를 유지해왔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관통하는 주제 의식은 바로 “법치주의 정착”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2015년 설문조사에서는 법치주의 정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진
적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장기적 발전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것을 법
의식조사의 추진 목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¹⁰⁾

<그림 Ⅲ-1> 법의식 실태조사 추진 목적¹¹⁾



다만, ‘선진적 법치국가’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헌법원리로서 국가권력이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를 영국에서는 코먼론(common law)상의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하였으며, 프랑스에

10)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53면.

11) 위의 보고서, 같은 면, <그림 45>

서는 국민들의 일반의지에 의한 ‘법률의 지배’(règne de la loi) 또는 ‘법률국가’(la suprématie de la règle de droit), 독일에서는 행정에 대한 법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Rechtsstaat),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 등 헌법의 최고성을 강조하는 등¹²⁾ 여러 국가의 역사적 조건과 경험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과 용어를 갖고 있지만, 현재 하나의 공통점은 이때의 법률이란 모두 정의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법치주의를 그 이전과 구별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로 보고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근거한 법 작용을 의미한다. 이때의 법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실정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정법은 법적 안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 일반성, 신뢰보호성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¹³⁾ 이러한 형식요건을 갖춘 법률과 그에 의한 지배는 법치국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법률이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가치적 측면을 강조한다.¹⁴⁾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은 경성헌법의 채택, 기본권과 실질적 적법절차의 보장, 권력분립, 사법적 권리보장,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 행정의 합법률성 등이라 할 수 있다.¹⁵⁾

그 동안 연구원에서의 법치주의 정착은 이처럼 국가권력의 생성 및 집행과 적용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합헌성 내지 합법성을 요구하는 측면과 함께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법치주의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원칙으로서 설문조사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준법정신 정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적 요소를 순기능적으로 이해한다면, 국민들의 준법정신이외에도 법이용성, 법순응성, 법교육의 필요성 등 법률생활 전반에 걸친 법과 국민과의 관계 정도

12)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06, 10면.

13) 김도균·최병조·최종고, 『법치주의의 기초 - 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16~19면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14) 위의 책, 20면.

15) 위의 책, 같은 면.

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들, 가령 법이해의 용이성, 일상생활에서 법률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법교육의 필요성 등 준법에 전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준법의식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에서 더 나아가 선진적 법치주의를 이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령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적 참여를 법치주의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선진적 법치주의란 입법과정 및 법집행과 법적용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어 집행자 및 권력자가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지원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법적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정부 및 학문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된 양질의 법률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적 법치주의 정착은 중요한 연구원의 과제가 된다.

법률은 우리 몸에서의 혈액, 시장에서의 화폐처럼 국가와 권력에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회변동의 매개체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교차점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확인하고, 정부와 같은 공공영역의 전문성을 담보하여, 더 좋은 법률을 생산하여 법률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충족시켜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현대 입법에서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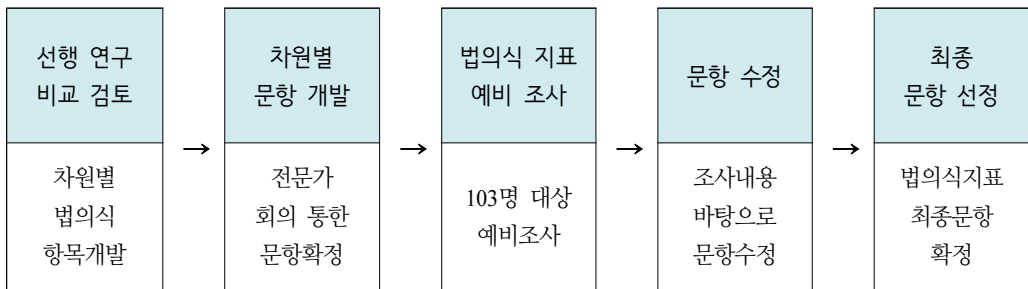
입법절차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법 집행 및 법 적용 단계에서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의 민주적 의사가 법률의 변동에 영향을 주어 법치주의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관련하여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굴·수집하도록 발전하는 것이 향후 법의식조사의 설문 목적으로서의 “선진적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입법 자료의 수집”과의 연계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진적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입법 자료의 수집”이라는 법의식조사의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법의식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문 개발 및 법의식지표 개발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2절 법외식지표의 구성

I. 법외식지표의 설계 과정

2015년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설문지 지표 개발과정을 보고서에 서술한 바 있다. 설문지표 과정은 아래의 그림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2> 2015년 국민법외식조사 '법외식지표' 개발 과정¹⁶⁾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비교 검토 및 차원별 문항개발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의 설문조사 지표개발에서는 미국변호사회의 Rule of Law Index가 중요한 비교·검토의 자료가 되었다. 이것은 2008년 법외식조사에서는 일본의 설문조사 자료가 비교·검토의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차이점을 갖는다.

최근 서구 국가 및 일본에서는 연구원의 법외식조사와 같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의 비교·검토 자료를 구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법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특정한 가정 하에서 그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과학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조사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의 지배 지표(Rule of law Index)는

16) 현대호·김명아, 위의 보고서, 154면. <그림 46> 2015년 국민법외식조사 법외식지표 개발 과정

미국변호사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인 세계사법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가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법의 지배 지표(Rule of Law Index)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¹⁷⁾

법의 지배 지표 설문은 법치주의의 정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정적 상황들을 주고 응답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선택을 질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나라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의 부패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들을 설정하고 있다. “모르겠다”를 포함한 5지선다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에서 4개의 질문을 세트로 묶고 있는 행렬식 질문형식을 갖고 있다.

2015년의 설문지표 개발과 행렬식 질문은 법의 지배 지표(Rule of Law Index)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설문에서 한국은 국가별 순위에서 10위권 내지 낮게는 20위권으로 매년 기록되어 있다.¹⁸⁾ 국내의 비교·검토 자료로는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와 함께 형사정책연구원 및 법무부 등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들 수 있다.

II. 법의식지표의 변화

2008년 설문	2015년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동과 가치관 -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법생활 -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 현행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한 가치관, 인식 및 법생활 (시계열적 비교를 위한 설문) - 주요 법 관련 현안 - 지표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대한 관심 · 법에 대한 인식/정서

17) 현대호·김명아, 위의 보고서, 159면 각주 164) 참조.

18) 세계사법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가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법의 지배 지표(Rule of Law Index)를 조사하고 있는데, 8개 대주제와 44개 소주제를 선정하여 전 세계 113개국을 조사하며, 나라마다 대표적인 세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1천명의 평가, 그리고 그 나라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합쳐 최고 1점, 최저 0점으로 각 나라의 점수를 매긴다. 자세한 것은 한겨레,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한국 인권 어디까지 왔나,” 2018. 4. 10.자 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405756> 참조. (최종 접속일: 2018년 11월 1일)

2008년 설문	2015년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대한 준수 ·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 법의 실효성 보장 · 법의 제정/집행

2008년까지의 설문조사에서는 특별히 “지표”라는 용어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가치관의 격차 및 인식과 정서, 법생활과 관련된 내용, 당시의 정책적 요구가 반영된 사법 개혁, 현행 법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비교하면 2015년 설문에서는 지표를 구성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발전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목표인 선진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자료 모음이라는 명목 아래 과거와에 시계열적 비교를 위한 기존의 설문과 여론조사적 성격을 갖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고, 6가지 지표를 설정한 후 다시 횡렬식으로 3개 내지 6개의 유사한 내용과 의도를 갖고 있는 질문들을 묶은 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형태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불확실한 표현, 즉, 법의 실효성 보장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적 관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인지, 아니면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에 관한 설문인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문들은 법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지표로 볼 수 있다.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5 법의 실효성 보장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42.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문43. 법은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인다	①	②	③	④	⑤
문44. 법은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인다	①	②	③	④	⑤
문45. 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46. 법은 정부 권한을 통제(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또한 지표를 구성한 일부설문 중에서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에서는 이념 성향을 물으면서 “최하층, 중간층, 최상층”으로 분류하는 등과 같은 오류¹⁹⁾도 일부 보이고 있다.

Ⅲ. 법의식지표의 설계의 일반원칙

1. 적합한 질문 형태의 선택

법의식지표 설계를 위한 질문은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과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자신의 말로써 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을 말한다.²⁰⁾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주로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는데 즉, 응답자에게 조사자가 마련한 보기 중에서 대답을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설문조사 질문 형태이다.²¹⁾ 설문조사에서는 폐쇄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처리의 용이성과 응답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²²⁾

19) 현대호 · 김명아, 앞의 보고서, 402면.

20) Earl Babbie 저, 고성호 외 10인 옮김, 사회조사방법론 13판, CENGAGE, 2018, 344면.

21) Earl Babbie 저, 고성호 외 10인 옮김, 위의 책, 같은 면.

22) Earl Babbie 저, 고성호 외 10인 옮김, 위의 책, 345면.

2008년 이후 국민법의식 조사의 경우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문은 3천명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을 사용하였다. 다만, 온라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면접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설문조사였다는 점에서 심층적이고 질적인 면접조사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 점에서 향후 필요할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응답자의 대응 능력

설문은 응답자의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즉, 설문응답자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연구원의 법의식조사는 질문지 구성에 있어서 법률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대응 능력 유무나 대응 능력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 즉, 국민 법의식조사의 경우 전문적인 법률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또한 질문에 있어서 질문자체가 응답자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거나 대부분 “모르겠다”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설문지를 구성할 때 일반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거나 경험해 본 바에 기반한 법률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대상자가 법(률)전문가 인 조사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2015년 당시에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가중치를 둔 바 있다. 다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설문대상자 중에서 자연스럽게 법(률)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법의식”조사라는 점에서 법(률)전문가의 의식이 일반국민의 의식보다 반드시 더 높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3. 편향된 문항의 배제와 중립적 용어 사용

편향(bias)은 응답자에 특정한 방식으로 대답하도록 부추기는 질문의 모든 속성을 의미한다.²³⁾ 이 점과 관련하여 사회적 바람직함(social desirability)을 주의하여야 한다.²⁴⁾

다만 편향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제공과 설문내용이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며 주관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연구원 설문의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지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편향을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편향을 얼마나 배제하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설문예시 125) >

<p><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문17. 최근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님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p>
<p>예시1 문17. 최근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의 합헌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님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p>
<p>예시2 ○○님은 성매매처벌법을 근거로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p>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 설문17은 성매매처벌법을 근거로 한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국민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위의 실제 설문은 위헌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정보를 응답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구성이 응답자에게 “위헌”이라는 부정적

23) 위의 책, 352면.

24) 위의 책, 353면.

25)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44면.

“권위적이다”를 선택지에 넣어서 동등한 카테고리 속에서 놓고 선택하도록 배치하고 있다.

응답자의 정서를 묻는 설문이 폐쇄형 질문으로 완성도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대답들이 선택 대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응답자는 불완전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그 선택에 있어서도 “공평하다”와 “불공평하다”는 양립 불가능한 선택지이지만, “민주적이다”와 “권위적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민주적이다”와 “권위적이다”는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단어라는 점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자체로 바람직한 설문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위에서 선택지로 나열하고 있는 각각의 단어 내지 용어는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응답자의 정서를 확인하도록 척도를 주어 물을 수 있는 법 관련 정서에 연결된 용어들이라고 할 것이다.

4. 행렬식 질문의 문제

동일한 일련의 응답범주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질문들을 묻기 원할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리커트 응답 범주가 사용될 때마다 나타나는 경우이다.²⁷⁾

행렬식 질문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응답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²⁸⁾ 그렇지만, 서로 다르고 또한 매우 특이한 응답 세트가 보다 적합한 문항의 경우에도, 설문지 구성의 용이함으로 인해서 행렬식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유혹에 들게 하는 위험을 갖게 될 수 있다.²⁹⁾ 나아가 이러한 질문구성은 특정한 응답세트를 응답자에게 암시할 수 있다.³⁰⁾ 각 설문의 지향점이 다를 경우에는 응답자들은 앞부분의 질문을

27) 현대호·김명아, 위의 책, 359면.

28) 현대호·김명아, 위의 책, 같은 면.

29) 현대호·김명아, 위의 책, 같은 면.

30) 현대호·김명아, 위의 책, 같은 면.

읽고 위 부분의 응답까지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예측하고 설문을 잘못 읽을 수 있다.³¹⁾ 이러한 면에서 행렬식 질문지가 갖는 한계를 고려하여 응답 세트를 구성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5. 문항의 형식적 요건

문항은 짧을수록 좋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단순한 질문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응답자들이 문항을 빨리 읽고, 어려움 없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설문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그리고’로 연결되는 쌍렬식 질문은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두 개의 질문이 되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설문예시 3³²⁾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6 법의 제정/집행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47. 국회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문48. 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49. 정부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50.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현대호 · 김명아, 위의 책, 같은 면.

32)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15, 400면.

위의 질문은 국회, 법원, 정부, 수사기관들이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헌법기관 내지 정부기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이다. 그런데 이 설문은 헌법기관 내지 정부기관이 ‘외부’의 권력이나 재력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초점이 놓여져 있을 뿐 ‘권력’과 ‘재력’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헌법기관 등의 책임 및 부패를 묻는다는 점에서는 위의 설문은 문제가 없지만, 권력에 의한 부패와 재력에 의한 부패는 다른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위의 설문은 일정부분 쌍렬식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점에서 애매한 내용을 갖게 된다. 재력에 의한 부패는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 질문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권력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재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보통이다’라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대체로 그렇다’ 내지 ‘매우 그렇다’로 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응답자가 정확한 답변 방법을 파악하기 힘든 내용을 갖는 설문이라 할 수 있다.

6. 소 결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의식 지표를 설정하는 경우 적합한 질문형태인가, 응답자는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질문지는 중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응답만을 담고 있는가 등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 법의식지표와 예비설문 검토

제1절 법의식조사와 법의식지표 설계의 방향

제2절 외국의 법치주의 지표

제3절 법의식지표의 구상과 내용

제4장

법의식지표와 예비설문 검토

제1절 법의식조사와 법의식지표 설계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는 “실질적인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입법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에 맞는 법의식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법의식조사가 전통적인 법에 대한 인식과 서양 계수법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사회과학적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서 시작된 것에 비하여,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법의식조사는 법치주의의 실질화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입법, 집행,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법률 생태계에서 법이 민주적으로 제정되고 제정 목적에 맞는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법률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치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라 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법제도를 따르지 않는 괴리현상은 우리 법치주의의 당면문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법준수 수준뿐만 아니라 과연 법이 수범자가 용인할 수 있게 민주적으로 제정되었는지, 법집행이 공정한지,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실질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조사는 우리 입헌주의 및 법치주의의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단순한 법에 ‘의한’ 지배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법’에 의한 지배와 이에 근거한 건강한 ‘국가권력의 통제’라는 입헌민주주의적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를 삼을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권한의 통제와 기본권 보호는

를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법외식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외식조사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세부 지표를 개발하여 조사의 체계와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법외식조사는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법현상에 대하여 질문하여 국민들의 생각을 입법자료로 모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외식조사는 기초적인 입법자료의 수집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이 법제도 구현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를 객관적이면서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부가적인 목적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에서 법의 목적과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법현상들에 대한 조사라는 목적 의식을 강화한다면, 법외식지표도 그에 걸맞게 법현상 전반에 걸쳐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표설계는 법률의 생애사(生涯史)적인 순환과정에 맞추어서 입법, 집행, 적용, 다시 개정 내지 폐지의 순서를 거치며 다양하게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항목들을 지표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법인식, 법승인, 법비판, 법률용어 등 기초 법학적 주제들과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노동법, 국제법 등 법분야별로 그 당시에 국정과제와 중요하게 연관되는 입법이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생각을 물어볼 수 있게 된다.

법치주의 정착을 통한 법률문화의 발전은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가 되고 있다. 현대 국민국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양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지표의 설계 및 분석은 여러 국가들을 통괄하는 보편성을 갖는다. 이러한 보편성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사용하는 법치주의지표들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법치주의 수준이나 제도화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법준수 및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묻고 있다.

비록 이러한 연구가 국가들 사이의 법치주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국제적 비교목적에 갖는다는 점과 각 국가의 역사와 법률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 법제도 중심으로 지표가 설계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 법치주의를 진단하고 확인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국제비교를 위한 법치주의 지표들을 살펴보아서 우리 법치주의 지표(법의식지표) 설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2절 외국의 법치주의 지표

I. 세계사법프로젝트의 법의 지배 지표

1. 세계사법프로젝트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2006년 세계사법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를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치주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별도의 독립된 비영리기관을 설립하였다.

세계사법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는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수준(Rule of Law Index)을 조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수준을 지표화 하여 조사하고 비교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인 <http://worldjusticeproject.org>에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한국 법제연구원의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서도 이 법의 지배 지수를 소개하고 있다.

세계사법프로젝트는 법의 지배의 의의에 관해서 효과적인 법의 지배는 부패를 줄이고 빈곤과 질병에 대처하며, 크고 작은 불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며, 법의 지배는 공동체의 평화와 형평 및 기초적 개발과 정부책임 그리고 기본권 존중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고 하고 있다.³³⁾ 법의 지배는 더 나은 공공의료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정치적 참여를 의미하며, 그것은 공동체가 최고로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의 노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⁴⁾

33) World Just Project 사이트, <https://worldjusticeproject.org/> 최종방문일 2018.11.1.

34) 위의 홈페이지 같은 면.

법의 지배는 국민들의 예견가능성과 동등한 대우라는 요소를 갖는³⁵⁾ 법치주의의 영미식 표현이다. 법의 지배는 독일식 조어(造語)라 할 수 있는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발전 경로와 내용을 갖고 있다. 다만, 현대국가에서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권력의 헌법과 법에 의한 통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법의 지배 조사는 법의 지배가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부가 법의 지배를 고수하도록 하는 힘을 더 크게 강화하며, 법의 지배를 여러 학문을 통하여 이해하거나,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³⁶⁾

이 조사는 법치주의 설문 of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설문은 여러 국가의 법의 지배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종합적이고 다양한 설문항목을 사용하여 국제적 비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³⁷⁾ 평가방법은 주로 법률 분야별로 국민들과 법전문가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상황에 대한 설문을 하고 응답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반응을 대답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2. 법의 지배 지표의 내용

세계사법프로젝트는 4가지 기본원칙에서 법의 지배 지표(Rule of Law Index)를 설계하였는데, 첫 번째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었다. 즉, 정부와 민간은 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의 성격(Just Laws), 즉 법성(法性)에 관한 것이다. 법률은 명확하여야 하며, 공개되어야 하고, 안정성을 가지야 한다는 것이 법성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사람의 안전과 재산권 및 핵심적 인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이다. 법률제정과 집행 그리고 강제 등의 절차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접근가능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절차(Accessible & Impartial Dispute Resolution)이다. 재판

35) 아담 셰보르스키·호세 마리아 마라발 외 지음, 안규남·송호창 외 옮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2008, 71면.

36) 위의 홈페이지 같은 면.

37)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해당 내용은 보고서 159면부터 163면까지 소개되어 있다.

은 유능하고 윤리적이며 독립성이 있는 대표들과 접근 가능한 중립자인 재판관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재판은 충분한 근거와 그들이 있는 공동체의 구성을 반영하여야 한다.³⁸⁾

이러한 원칙은 9개 지표(factors)로 구체화 된다. 첫 번째는 정부권력의 제한이며, 두 번째는 부패의 부재, 세 번째는 열린 정부, 네 번째는 기본권, 다섯 번째는 질서와 안전, 여섯 번째는 규제 집행, 일곱 번째는 민사적 사법절차, 여덟 번째는 형사적 사법절차, 아홉 번째는 비공식적 사법절차이다.³⁹⁾

이러한 지표를 중심으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법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9개 지표는 각각 그 세부항목(sub-factor)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세부항목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설문을 구성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각 9개 지표와 그 세부항목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 WJP의 지표와 설문⁴⁰⁾ >

1. 지표 1 (Constrains on Government Powers): 정부권한에 대한 통제
 - 1.1 정부권한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1.2 정부권한이 입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 1.3 정부권한이 사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 1.4 정부권한이 독립적 감사와 평가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 1.5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는다.
 - 1.6 정부권한이 비정부단체에 의한 견제를 받는다.
 - 1.7 권한의 이전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2. 지표 2 (Absence of Corruption): 부패의 부재
 - 2.1 행정부 공무원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다.
 - 2.2 사법부 공무원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다.
 - 2.3 경찰과 군인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다.
 - 2.4 입법부 공무원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다.

38)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7-2018』, 2018, 11면.

39) World Just Project 사이트, <https://worldjusticeproject.org/> 최종방문일 2018.11.1.

40)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p.8;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p.14. 현대호·김명아의 위의 보고서, 161~162면 표의 내용 재인용.

3. 지표 3 (Open Government): 열린 정부
 - 3.1 법률이 공개되고 접근가능하다.
 - 3.2 법률이 안정적이다.
 - 3.3 정부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국민참여
 - 3.4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4. 지표 4 (Fundamental Rights): 기본권
 - 4.1 평등과 차별의 존재
 - 4.2 생존권과 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 4.3 적법절차와 피의자의 권리
 - 4.4 표현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 4.5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 4.6 자의적 침해로부터 사생활이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 4.7 집회, 결사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 4.8 노동 기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5. 지표 5 (Order and Security): 질서와 안전
 - 5.1 범죄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 5.2 민사적 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된다.
 - 5.3 국민들이 자력구제로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6. 지표 6 (Regulatory Enforcement): 규제 집행
 - 6.1 정부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 6.2 정부규제가 부적절한 영향없이 적용되고 집행된다.
 - 6.3 행정적 절차가 비합리적 지연없이 이행된다.
 - 6.4 적법절차가 행정절차에서도 존중된다.
 - 6.5 정부가 적절한 보상없는 수용은 하지 않는다.
7. 지표 7 (Civil Justice): 민사적 사법절차
 - 7.1 국민들은 민사재판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7.2 민사적 사법절차에는 차별이 없다.
 - 7.3 민사적 사법절차에 부패가 없다.
 - 7.4 민사적 사법절차에 정부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7.5 민사적 사법절차는 비합리적인 지체의 대상이 아니다.
 - 7.6 민사적 사법절차는 효과적으로 이행된다.
 - 7.7 대체적 분쟁 해결(ADR)이 접근가능하고, 공평하고 효과적이다.
8. 지표 8 (Criminal Justice): 형사적 사법절차
 - 8.1 범죄수사제도가 효과적이다.

- 8.2 형사재판제도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다.
- 8.3 교정제도가 범죄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이다.
- 8.4 형사적 사법제도가 공정하다.
- 8.5 형사적 사법제도에 부패가 없다.
- 8.6 형사적 사법제도에 정부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8.7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 9. 지표 9 Informal Justice (비형식적 사법절차)
- 9.1 비형식적 사법절차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다.
- 9.2 비형식적 사법절차는 공정하고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9.3 비형식적 사법절차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시사점

2018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종합 지표 순위에서는 20위를 기록하였다. 1위는 덴마크, 2위 노르웨이, 3위 핀란드, 4위 스웨덴, 5위 네덜란드 등 투명성이 높은 북부유럽 국가들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평양-아시아 그룹에서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일본, 홍콩 그 다음으로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

위의 지표와 세부 지표에 따른 설문문항들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설문구성은 그 자체로서도 국민들의 법치주의 의식 및 행동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설문의 구체성 보다 설문을 통해서 직관적인 인식 및 의식을 통하여 직접적인 법의식을 묻는 형태를 취하였다는 점에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견해도 있다.⁴¹⁾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법에 대한 준수 차원이나,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의 제정·집행 설문 문항 개발 과정 등에서 법의 지배 지표 (Rule of Law Index)에 사용된 설문 요소 등을 상당부분 참조하였다고 한다.⁴²⁾

41) 현대호·김명아 위의 보고서, 163면.

다만, 위의 지표들은 사법절차에 관한 내용에 많은 비중이 있다는 내용상의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설문항목을 보면 국민들의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지표 및 설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I.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규제제도 지수

1.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법치주의 평가요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발간되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세계 137개국의 국가경쟁력을 비교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창립된 국제 민간 협력기구로서 스위스에 있다.⁴³⁾ 매년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져 있다.

이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은 물론이며, 기업인들과 사회지도층들이 글로벌 이슈를 비롯한 지역과 산업의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⁴⁴⁾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매년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2018년의 경우에는 한국은 140개국 중에서 종합순위 15를 기록했다.⁴⁵⁾ 미국이 1위, 싱가포르 2위, 독일 3위 및 스위스가 5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5위, 홍콩이 7위, 대만이 13위, 그리고 중국이 28위를 차지하였다.⁴⁶⁾

이 연구는 각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직접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기본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제도분석을 위한 여러 지표들은 법치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설문내용 중 하나인

42) 위의 보고서, 같은 면.

43) <https://www.weforum.org/about/world-economic-forum> 홈페이지 기관 소개부분. 최종방문일 2018. 11. 1.

44) 위의 홈페이지. 최종방문일 2018. 11. 1.

45) “한국 국가경쟁력 140개국 중 15위…ICT·거시경제 1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년10월17일 수정, 2018년11월1일 접속,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4743&call_from=naver_news.

46) 위의 홈페이지, 같은 면. 최종방문일 2018. 11. 1.

정부규제부담 관련 항목에서 한국은 최근 3년 동안 100위권 안팎에 머무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⁴⁷⁾

글로벌 경쟁력 평가는 국가 제도화 수준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국가경쟁력 차원의 평가라는 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내용을 보면 법치주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 제도 평가의 지표 및 평가내용

2018년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 지표는 기본요인,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등 4개 분야의 12개 부분으로 평가지표를 나누고 있다.⁴⁸⁾ 이 중에서 법치주의와 관련된 부분은 제도 부분이다.

[표 IV-1] 4대 분야 12개 부문별 순위⁴⁹⁾

기본 요인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 경제 안정성	보건	기술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스템	시장 규모	기업 활력	혁신 역량
27	6	1	1	19	27	67	48	19	14	22	8

2018년도 한국의 평가결과를 부문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전성과 ICT 보급이 1위를 차지하였다. 다른 평가결과는 교통과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의 인프라가 6위, 전력보급률 1위, 해상운송 연결정도 3위, 철도서비스는 4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비교적 최상위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도 높게 평가받아 8위를

47) “간막이 규제에 찢겨지는 신성장...’를 혁신해야 살릴수 있다”, 문화일보, 2018년8월13일 수정, 2018년10월15일 접속,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1301070303325001>.

48) Klaus Schwab, Insight Report,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World Economic Forum, 2017, 12면.

49) 순위를 정리한 표와 순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18. 10. 17, 1면에서 인용. 원본은 위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168면.

차지했는데, R&D부문 지출은 2위, 특허출원은 3위, 연구기관 역량은 11위 등으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⁵⁰⁾

반면에 독과점과 복잡한 관세체계 등 생산물시장이 67위이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 등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48위, 그 밖에 노사협력은 124위, 정리해고비용은 114위, 노동자 권리는 108위 등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도 있다.⁵¹⁾

국가경쟁력 보고서 제도부문의 지표는 아래와 같다. 제도부문을 공공과 민간을 나누어서 공공부문은 재산권, 윤리와 부패, 부당한 영향력, 그리고 공공부문의 성과 및 안전으로 나누었으며, 민간부문은 기업윤리와 책임으로 나누었다.⁵²⁾

[표 IV-2] 국가경쟁력 보고서 제도부문 지표

1. 제도 부문	A. 공공 제도	1. 재산권	1.01 재산권 1.02 지적재산권
		2. 윤리와 부패	1.03 공적 자금의 전용 1.04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1.05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3. 부당한 영향력	1.06 사법부의 독립성 1.07 정부규제의 부담
		4. 공공 부문 성과	1.08 재정지출의 낭비 1.09 정부규제 부담 1.10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효율성 1.11 규제이의를 위한 법제도의 효율성 1.12 정부정책입안의 투명성
		5. 안전	1.13 테러리즘에 대한 기업비용부담 1.14 범죄와 폭력에 대한 기업비용부담 1.15 조직범죄 1.16 경찰 행정의 신뢰성

50) “한국 국가경쟁력 140개국 중 15위…ICT·거시경제 1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년10월17일 수정, 2018년11월1일 접속,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4743&call_from=naver_news.

51) 앞의 기재부 보도자료 2면.

52) Klaus Schwab, Insight Report,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World Economic Forum, 2017, 322면.

	B. 민간 제도	1. 기업윤리	1.17 기업의 윤리적 행동
		2. 책임	1.18 감사 및 회계기준의 강도 1.19 이사회 의 능률 1.20 소액주주 이익의 보호 1.21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도

그런데 이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과 조사는 아래와 같이 구성(Component)을 다시 구분(Structure)하고 있다. 즉,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대상을 안전, 사회적 자본,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 공공부문 성과, 투명성, 재산권, 기업의 지배구조로 다시 세분화하여 설문결과와 통계자료를 통해서 지표를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조사지표의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한국의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3] 조사지표와 조사방법 그리고 한국의 평가순위⁵³⁾

1. 제도 부문 평가지표와 평가항목 (한국 27위)				
지표	번호	평가항목	순위	조사 방법
A. 안전	1.01	조직 범죄(마피아)	40	설문
	1.02	살인사건 발생률	22	통계
	1.03	테러 발생률	44	통계
	1.04	경찰 서비스의 신뢰성	35	설문
B. 사회적 자본	1.05	사회적 자본	89	통계
C.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	1.06	예산 투명성	1	통계
	1.07	사법의 독립성	63	설문
	1.08	규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법적 절차의 효과성	57	설문
	1.09	언론의 자유	38	통계
D. 공공부문 성과	1.10	정부규제 부담	79	설문
	1.11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절차의 효과성	50	설문
	1.12	전자적 참여제도	1	설문

53) 아래의 표는 Klaus Schwab, Insight Report,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World Economic Forum, 2018』, 133면의 조사지표와 325면의 한국의 평가결과를 인용하여 본 보고서 연구진이 작성함.

지표	번호	평가항목	순위	조사 방법
	1.13	정부의 미래지향성	49	통계
E. 투명성	1.14	부패 발생	45	통계
F. 재산권	1.15	재산권	35	설문
	1.16	지적재산권 보호	47	통계
	1.17	부동산 행정의 질	6	통계
G. 기업 지배구조	1.18	감사 및 회계기준의 엄격함	50	설문
	1.19	이익규제의 충실	23	통계
	1.20	주주 지배구조	15	통계

2018년 보고서에서는 설문지표인 안전, 사회적 자본,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 공공부문의 성과, 투명성, 재산권, 기업지배구조에서 한국은 전체 순위에서는 15위이었던 것에 비해 제도부문의 평가는 27위에 위치해 있다.⁵⁴⁾

이러한 설문지표에 대한 설문과 조사는 각각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2018년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 설문지표는 안전(security)이며, 이에 관해서는 4가지 항목을 조사한다.

안전에 관한 첫 번째 평가항목은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organized crime)의 폭력행위나 협박 및 강요 등 범죄행위에 의해서 부담되는 사업비용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사회나 국가에서는 범죄집단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범죄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한다.⁵⁵⁾

안전에 관한 두 번째 평가항목은 살인사건발생률(Homicide rate)에 관한 것이었다. 인구 10만명당 고의적 살인사건의 발생률을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이 평가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가 작성하는 통계에 따른다.⁵⁶⁾

5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325면.

55) 위의 보고서, 633면.

56) 위의 보고서, 같은 면.

안전에 관한 평가항목 중 세 번째는 테러사건 발생률을 평가하고 있다. 테러 공격의 빈도와 심각성을 평가하는데, 지난 5년 사이에 테러사건의 사상자와 테러리스트의 수(數)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이 주도하는 테러리즘 관련 데이터(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 START)를 사용하여 평가한다.⁵⁷⁾

안전에 관한 평가항목 중 네 번째는 경찰서비스의 신뢰도에 대한 것인데,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⁵⁸⁾

두 번째 설문지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것이다.

이 지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설문평가만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회적 자본은 주로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개발한 번영지수 중 사회적 자본(the Social Capital pillar of the Legatum Prosperity Index™)에 관한 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레가툼 연구소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사회적 응집력 및 참여도(사회적 자본의 사회내 연결), 사회 및 가족 네트워크(사회적 자본을 결속), 그리고 정치 참여 및 제도적 신뢰(사회적 자본 정치 및 제도와의 연결) 등 세 가지 영역에서 국가 성과를 측정한다.⁵⁹⁾

세 번째 설문지표는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와 균형은 현대 헌법의 권력분립을 뜻한다. 이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4개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첫 번째 평가는 예산의 투명성(Budget transparency)이다. 정부가 예산 및 지출 관련 자료들을 공표하는지 여부가 조사대상이 되는데, 이 조사는 세계은행그룹(The World Bank Group)의 평가를 반영한다.⁶⁰⁾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두 번째 평가는 사법의 독립성(Judicial independence)

57) 위의 보고서, 같은 면.

58) 위의 보고서, 634면.

59) 위의 보고서, 같은 면.

60) 위의 보고서, 같은 면.

이다. 이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법부가 정부 또는 개인과 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었는지를 물어본다.⁶¹⁾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세 번째 평가는 규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법적 틀이 얼마나 효과적인지(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를 물어보는 것인데, 평가의 방법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도전 내지 이의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⁶²⁾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네 번째 평가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에 관한 것이다. 이 평가는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이 지수는 언론의 독립성, 뉴스 제작 지원 인프라, 언론인에 대한 폭력 행위 및 정보 등을 살펴보는데, 주로 1) 언론인들과 언론에 반대하는 학대적 그리고 폭력적 행동의 정도와 2) 다원주의, 언론의 독립성, 자기 검열, 투명성 및 각국의 인프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서 평가된다.

네 번째 설문지표는 공공부문의 성과이다. 이 지표와 관한 평가항목은 4가지이다.

공공부문의 성과에 관한 첫 번째 평가는 정부규제의 부담(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이다. 이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설문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허가나 의무, 보고 등 정부규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를 묻는다.⁶³⁾

공공부문의 성과에 관한 두 번째 평가는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틀의 효과성(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이다. 이 조사도 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기업활동에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묻는다.⁶⁴⁾

61) 위의 보고서, 같은 면.

62) 위의 보고서, 같은 면.

63) 위의 보고서, 같은 면.

64) 위의 보고서, 같은 면.

공공부문의 성과에 관한 세 번째 평가는 전자적 참여(E-Participation)에 의한 것이다. 이 평가는 유엔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에서 사용하는 전자참여 지표(the E-Participation Index)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표는 정부와 시민 사이의 온라인 서비스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측정한다.⁶⁵⁾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전자정보의 공유 (e-information sharing)와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 (e-consultation) 그리고, 전자의사결정(e-decision making) 등을 측정한다.⁶⁶⁾

공공부문의 성과에 관한 네 번째 평가는 정부의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에 관한 것이다. 이 평가도 설문조사에 의하는데, 설문내용은 4가지이다. 첫째 디지털 기업모델(전자 상거래, 공유 경제, 핀테크)을 법적인 틀에서 채택하는데 얼마나 빠른가?, 둘째, 정부는 안정적 사업 환경을 위한 정책을 어느 범위에까지 보장하는가? 셋째, 정부는 기술적, 사회 및 인구 통계학적 추세와 보안 및 경제적 변화 등에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 넷째, 정부는 장기적인 전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본다.⁶⁷⁾

다섯 번째 설문지표는 투명성에 관한 것이다. 이 평가는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명성에 관한 유일한 평가항목은 부패발생(Incidence of corruption)이다. 평가는 국제 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표(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에 대한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다.⁶⁸⁾

여섯 번째 설문지표는 재산권(Property rights)이다.

재산권에 관한 첫 번째 평가항목은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정부는 재산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지인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한다.⁶⁹⁾

65) 위의 보고서, 같은 면.

66) 위의 보고서, 같은 면.

67) 위의 보고서, 같은 면.

68) 위의 보고서, 같은 면.

69) 위의 보고서, 같은 면.

재산권에 관한 두 번째 평가항목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이다. 이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도를 묻는다.⁷⁰⁾

재산권에 관한 세 번째 평가항목은 부동산 행정의 질(Quality of land administration)이다.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계은행그룹(The World Bank Group)의 부동산 행정의 질에 관한 지표(the Quality of land administration Index)를 사용하는데, 이 지표는 인프라의 신뢰성, 정보의 투명성, 지리적 범위, 부동산 분쟁해결 및 재산권의 평등한 접근 등을 평가한다.⁷¹⁾

일곱 번째 설문지표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첫 번째 평가항목은 감사 및 회계 기준의 엄격함(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인데, 이 평가를 위해서 감사 및 회계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⁷²⁾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두 번째 평가항목은 이익규제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이다. 이 평가는 세계은행그룹(The World Bank Group)의 이차율 규제 충돌 지표(the Extent of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Index)를 사용하는데, 이 지표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기업자산을 취득하는 등 기업이사들의 오용적 행태에 대한 주주들의 보호 방안을 측정한다.⁷³⁾

이 지수는 세 가지 차원의 이익충돌 규제를 평가하고 있는데, 첫째, 특수 관계자 거래의 투명성, 둘째, 주주들이 자기 거래를 한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주주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접근 및 법적인 비용 배분 등을 질문한다.⁷⁴⁾

70) 위의 보고서, 635면.

71) 위의 보고서, 같은 면.

72) 위의 보고서, 같은 면.

73) 위의 보고서, 같은 면.

74) 위의 보고서, 같은 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세 번째 항목은 주주들이 지배구조(Shareholder governance)이다. 이 경우에도 세계은행그룹(The World Bank Group)의 주주지배구조 정도에 대한 지표(the Extent of shareholder governance Index)를 사용하는데, 이 지표는 주주들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권리를 측정하고 있다.⁷⁵⁾ 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좋은 지배구조를 평가하는데, 첫째, 기업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주주의 권리 및 역할, 둘째, 과도한 이사회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버넌스 장치, 셋째, 소유 지분, 보상, 감사 및 재무 전망 등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이 평가의 구체적인 대상이 된다.⁷⁶⁾

설문은 지표에 따라서 한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간단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설문문의 형식은 영향 등의 정도를 1에서 7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⁷⁷⁾

[표 IV-4]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용하는 설문조사 내용⁷⁸⁾

안전	9.01 당신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사업상의 비용이 발생하는가?
	9.02 당신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범죄와 범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상의 비용이 발생하는가?
	9.03 당신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조직범죄로 인한 사업상의 비용이 발생하는가?
	9.04 당신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법과 질서를 집행하는 경찰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	10.01 당신의 국가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10.02 당신의 국가에서, 정부의 정책이 외부 환경 변화(기술변화, 사회와 인구학적 경향, 안전과 경제위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10.03 당신의 국가에서, 법제도가 기업들의 분쟁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10.04 당신의 국가에서, 법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정부의 조치나 규제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쉬운가?
	10.05 당신의 국가에서, 정부는 사업하기에 좋은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
	10.06 당신의 국가에서, 기업들이 정부정책이나 규제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얼마나 쉬운가?
	10.07 당신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의 윤리적 기준은 얼마나 높은가?
	10.08 당신의 국가에서, 정책이나 계약을 결정할 때, 정부 공무원들은 자신이 잘 아는 기업

75) 위의 보고서, 같은 면.

76) 위의 보고서, 같은 면.

77) Klaus Schwab, World Economic Forum, Editor, Executive Opinion Survey 201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2019], World Economic Forum, 2018, 10면.

78) 위의 보고서, 10~12면까지의 설문내용을 번역하여 인용함.

	들 또는 개인들에 대한 편애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가?
10.09	당신의 국가에서, 재정적 조치(보조금, 조세감면 등)가 경쟁을 어느 정도 왜곡시키는가?
10.10	당신의 국가에서, 농업 정책은 어느 정도 정책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10.11	당신의 국가에서, 기업들은 정부의 행정적 의무사항들(예를 들어 허가, 규제, 보고) 등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10.12	당신의 국가에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권은 어느 정도 보호되는가?
10.13	당신의 국가에서, 사법시스템은 정부나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10.14	당신의 국가에서, 재정자금이 기업이나 개인 또는 기업에게 얼마나 자주 낭비되는가?
10.15	당신의 국가에서, 회사의 기업윤리(공무원, 정치인 및 기타 기업들과 관계에서의 윤리적 행위)를 어느 정도 평가하는가?
10.16	당신의 국가에서,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개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로 갖는가?
10.17	당신의 국가에서,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가?
10.18	당신의 국가에서,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회사가 증거가 없는 추가적인 지불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 a. 수입과 수출 b. 공공시설 (예, 전화, 전기) c. 세금 납부 d. 공공계약 또는 허가의 대가 e. 재판의 승리
10.19	당신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빨리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가(예를 들어 이커머스, 공유경제, 핀테크 등)
10.20	당신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조직범죄, 범죄와 폭력에 드는 기업비용, 경찰은 법과 조례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 공공부문의 재정집행의 효과성, 정부의 정책이 외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의 정도, 법제도가 분쟁해결에 효과적인지, 정부부담에 대해서 기업이 법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쉽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사업하기에 좋은 정책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지, 정부정책이나 규제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이 관련 정보를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 정치인들의 윤리적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정책의 결정이나 계약 등에서 공무원의 특정한 기업 편애여부, 재정적 조치들의 경쟁 왜곡효과, 농업정책의 전체 경제정책에서의 균형성, 기업들의 행정의무에 대한 부담정도, 금융자산 등에 대한 재

산권 보호정도, 사법부의 독립성, 재정의 낭비, 기업윤리에 대한 평가,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 개인의 경제적 기회부여, 지적재산권의 보호, 뇌물과 부패,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정책 변화의 정도, 장기비전의 준비 등을 설문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3. 시사점

앞서 본 미국 세계사법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은 비교적 상위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제도부문 순위는 비교적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다.

세부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사회적 자본’이 89위로 가장 낮으며, 공공부문 성과 지표에서 정부규제 부담이 79위,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절차의 효과성이 50위,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 지표에서 사법의 독립성 63위, 규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법적 절차의 효과성이 57위 등 여러 항목에서 낮은 지표 값을 보이고 있다.⁷⁹⁾

규제 부담 및 규제에 대한 이의제기 등 규제 관련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사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설문 조사의 대상이 되는 표본 집단이 특정집단에 한정되어 있고, 설문결과도 많지 않아서 설문의 타당성이나 대표성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설문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⁸⁰⁾

다만, 이러한 논란과 상관없이 법제도의 평가지표로서 고전적인 국가의 의무인 안전과 재산권 보호라는 규정 이외에도 정부의 성과와 투명성 및 기업 지배구조 등을 평가지표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국제적 평가지표와 비교해서 매우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79) 앞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324면.

80) 고길곤·박세나, “국가경쟁력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44면.

제3절 법의식지표의 구상과 내용

I. 법의식 지표의 세분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는 주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국민들의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법률생활 관련 국민들의 법적 행동, 그리고 그 당시 현안적인 판례나 입법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정리하면, 변화된 가치관과 법인식 내지 정서, 법행동, 법적 현안이 기본적인 지표였다고 볼 수 있다.

2008년과 2015년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 지표에서는 지표설계 자체나 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한 큰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계열적 분석을 이유로 기본적인 틀이라 할 수 있는 지표를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의식 조사가 현안적인 법적 사회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역할도 일부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특별히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혁적 지표구성 형태는 법의식에 관한 다양한 설문과 법치주의의 여러 측면들을 조사하기에는 부족한 형태라 할 수 있다. 2015년 법의식조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법치주의 관련한 지표들과 설문들을 따로 구성하였다. 일반 설문 이후에 법관심, 법준수, 기본권보장,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의 제정/집행 등의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에 대한 설문이라 할 수 있다.

	2008	2015	WJP	GCR상의 Institute
1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		사회적 자본
2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인식	법에 대한 인식/정서	
3	법생활	법생활		
4	법현안문제 (사법개혁+ 현행법제)	법현안		
5		법 관심		

	2008	2015	WJP	GCR상의 Institute
6		법 준수		
7		기본권 보장	기본권	재산권
8		법의 실효성 보장	규제 집행	공공부문 성과
9		법의 제정/집행		
10			정부권한의 제한	견제와 균형
11			부패의 부재	투명성
12			열린 정부	
13			질서와 안전	안전
14			사법절차	
15				기업 지배구조

다만, 2015년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와 WJP나 GCR의 지표와 비교해 보면 2015년 지표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법치주의 관련성 내지 내용적 구체성에서는 외국의 지표들과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설문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지표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 참신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5년 지표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지표를 일반지표와 법치주의 지표로 구분하고 지표를 다양화시켜서 설문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게 만들 필요가 있다. 본래 법의식이란 법과 의식의 합성어이다. 의식이란 모든 정신작용을 말하며, 법의식이란 법과 관련된 모든 정신작용을 말한다. 사전적으로 정신(精神, mind)이란 감각, 지각, 감정, 기억, 욕구, 여러 형태의 추론, 동기, 선택, 인격적 특색, 무의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⁸¹⁾ 이러한 정신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또한 우리가 일반인이나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매우 한정적이다.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법의 본질, 법에 대한 정서, 법의 목적, 법과 정의의 관계, 법에 대한 이해, 법의 인식경로, 법교육의 필요성 등은 법의식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81)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9j1235a> 최종검색일 2015. 10. 11.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외식조사에서의 지표는 법률의 기초적인 영역별로 국민들의 정서나 인식을 고르게 확인하기 위한 내용적 도구라 할 수 있다.

지표의 구성이 내용적으로 국민법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지표에 속한 설문들 사이의 모순은 없는지, 조사가 가능한지 등의 지표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의 지표 설계는 그러한 연구를 하기에는 아직 지표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기본적인 지표만을 구성해 보기로 한다.

2015년부터 그 이전의 설문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그 동안 이러한 내용들을 지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법제연구원 개별설문들은 내용적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지표와 설문들로 재구성될 수 있다.

[표 IV-5] 추정된 기존의 법외식지표

	지표	설문 문항
법외식 지표	1. 법외식	법외식 / 정서
		법외식 경로
		이해 일반
		법개정 관심
		계약서 숙지
		이해의 어려움 / 알기 쉬운 법률용어
	2. 법의 필요성	필요성 여부
		필요한 법의 인지
	3. 법의 기능	법의 기능
	4. 법의 공정성	법의 공정성
	5. 법률서비스	지원서비스 이용
		소송에 대한 느낌
	6. 법교육	법교육 일반
		로스쿨 전문교육

이러한 기존의 설문들과 지표에 덧붙여서 기초법외학에서 주로 강의하는 법외 관련 내용을 보충해 보면 아래와 같이 설문지표와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설문을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와 보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래의 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가변적인 잠정적 지표가 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한 기초적인 법인식 지표는 법의 본질 및 법에 대한 정서, 법의 목적/기능, 법에 대한 인식경로/관심, 법과 사회정의, 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 법생활과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법적 현안 등이라 할 수 있다.

[표 IV-6] 확대한 법의식 지표

	기존 지표		확대된 지표
법인식 지표	1. 법인식	▶▶▶	1. 법의 본질
	2. 법의 필요성		2. 법에 대한 정서
	3. 법의 기능		3. 법의 목적/기능
	4. 법의 공정성		4. 법에 대한 인식경로/관심
	5. 법률서비스		5. 법과 정의
	6. 법교육		6. 법에 대한 이해/교육
			7. 법생활
			8.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법적 현안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법의식조사를 위해서 기초적인 법의식조사와 함께 법치주의 인식조사를 분리하여 제1부에서는 기초 법의식조사로 제2부에서는 법치주의 인식조사로 세분화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설문에서는 기본권 보호와 국가권력 통제 등의 법치주의의 핵심내용을 상당부분 설문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법의식조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법치주의 지표를 사실상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법치주의 지표는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민주화 이래로 한국이 발전해 온 민주주의의 경험과 권력분립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인식조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법치주의 지표와 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식 법치주의 지표를 사용하고 이를 소개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세계와 공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에서 시행된 몇몇 조사에서 우리 정부규제와 정부권력의 통제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법치란 인치(人治)와 구분되는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⁸²⁾ 이때의 법에 의한 통치는 지배세력이나 권력자의 자의(恣意)에 의한 지배가 아닌 일반적이고 이성(理性)적인 법규범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예견가능하고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법에 의한 국가통치원칙이 바로 법치주의라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관점에서는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법적 안정성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에 입장에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법적 통제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함께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내용이다. 권력분립, 국가기관의 법기속성, 법률에 의한 행정, 법적 안정성을 위한 명확성원칙,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권리구제절차의 보장 등이 현대 법치주의의 세부내용이 된다.

여기서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치우치는 지배의 논리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절차와 내용에서 정의, 실천 이성(理性), 민주주의 등 현대입헌주의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⁸³⁾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의 전통적인 의식구조나 법적 해결을 기피하는 경향 등 우리 사회가 갖는 행위양식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 법제도가 갖는 결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225면.

83) 이상영·김도균, 앞의 책, 18면.

즉, 법의 민주성 부족, 법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행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미흡과 소송 등 법적 구제에 대한 낮은 국민적 신뢰도 등이 법치주의의 장애를 일으키는 제도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에는 국가기관의 신뢰성 및 법적 구제의 실효성도 법치주의 안정성에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법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적용 사이에서 정치인과 공무원 및 학자 등 엘리트집단이 생각하는 법치주의와 수범자인 국민이 느끼고 체험하는 법치주의의 온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이 과연 국민들의 일반의지를 대표하는지 아니면 이익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우리 법치주의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법제정에서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그리고 사법부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법을 판단하고 있는지가 기본적인 지표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조사에서 강조하였던 법률의 준수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하나의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요약컨대 국민 눈높이에서 보는 법치주의는 보다 간명하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통제와 기본권 보호를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 지표가 된다.

그 예로서 국제연합(UN)에서 사용하는 법치주의 지표는 경찰행정과 사법부 그리고 재소자로 단순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성과, 청렴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취약한 그룹에 대한 대우, 행정능력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⁸⁴⁾

WJP조사 지표에서는 공무원의 부패와 처벌 및 경찰행정의 적법절차 준수와 사법부의 독립적인 구성 등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WJP 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핵심적인 법치주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권력의 통제 이외에 법적 성과나 효과성을

84) The United Nations, 『Rule of Law Indicators - Implementation Guide and Project Tools』,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1, 4면.

묻는 성과주의적 지표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실질적 평등, 복지, 공동체의 보호, 인권실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⁸⁵⁾ 이처럼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헌법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와 정부, 국회 등 정부기관의 권한통제 및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법 준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법의 가치적 측면인 민주성, 정당성, 효과성, 투명성, 신뢰성 등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법치주의 지표에 속한 설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Ⅲ. 각 지표에 따른 설문 구성

1. 기초적인 법외식 지표

1) 법의 본질

법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국민들이 법의 속성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설문이다. 이 지표에 속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은 아래의 예시들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법이 과연 이성이나 정의의 산물인지 아니면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의 힘의 결과인지를 묻는 것은 법의 본질에 접근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법률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성(法性)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초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질문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질문들을 구성해 보면 아래와 같다. 내용상 양립불가능 한 설문을 골라서, 다양한 범주의 질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5지선다형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다소 내용이 중복되거나 모순되더라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질문들을 대한 국민들의 동의

85) 김도균, 앞의 책, 42면.

위의 네모 안의 내용은 그동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 내지 정서를 물어왔던 대표적인 질문양식이었다. 위의 설문에서 선택항목인 ‘민주적’ 또는 ‘권위적’이라는 표현의 그 추상성 인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개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즉, 어떤 것이 민주적인지 또는 권위적인지에 관하여 국민들은 자신의 개별적인 경험과 주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고, 설문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위의 설문에는 선택항에 양립 불가능한 ‘공평’과 ‘불공평’이 있으면서, 대칭적이라 할 수 있는 ‘민주’와 ‘권위’가 동시에 있는 등 질문의 내용이 다소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설문의 형태가 부적합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많았다.

보기에 따라서 이 설문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느끼는 일반적인 정서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정서란 감정 내지 주관적 경험의 표현이란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의미가 다소 다르더라도 ‘민주적’ 또는 ‘권위적’이란 경향성에 대한 선택을 묻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설문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법에 관한 민주성과 권위 및 공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새롭게 질문을 구성해 보았다. 위와 같이 선택형으로 묻기 보다는 아래와 같이 여러 서술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것으로 설문의 형태를 바꾸어서 국민들의 법인식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당신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법은 권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모든 국민에게 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은 모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제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또는 권위, 보호, 안전, 박애, 인도, 공정, 정의, 민주, 자유, 보수, 진보 등 추상적인 여러 개념이나 가치 및 이념들을 열거하고 법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가장 가깝게 떠오르는 것

을 고르라고 하는 형식의 설문도 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를 알 수 있게 하는 질문형식이라고 할 것이다.

아래의 용어를 보시고 ‘법’이라는 말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용어 3개를 골라주십시오.

권위, 질서, 보호, 박애, 연대, 공평, 균형, 정의, 자유, 민주, 보수, 진보

3) 법의 목적/기능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 설문 중에서>

2 법에 대한 인식/정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6.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문27.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8.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29.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0. 주위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15년 설문은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여러 설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설문26번은 법 제정시 국민의 뜻이나 의견이 반영되는지, 즉, 민주적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앞에서 본 1번 설문과 다소 중첩되고 있다. 그 이외에는 권리 보호, 차별 없는 적용, 법 준수, 범죄신고 등 여러 주제를 묻고 있다.

이를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라는 지표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위의 내용들은 민주성 말고는 주로 법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법은 여러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적 중에서 어떠한 목적에 국민들이 주로 동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목적 내지 기능을 하나의 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재구성을 하였다.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당신은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타인과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송이 아닌 협상, 화해, 조정, 중재를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이나 결정을 받게 되면 일단 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이나 결정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송을 할 경우에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소송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법에 대한 인식 경로와 관심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 설문 중에서>

문2. ○○님은 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2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 ② 인터넷 |
| ③ 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 ④ 정부 홍보물 |
| ⑤ 주위 사람 | ⑥ 학교 |
| ⑦ 기타 () | ⑧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1. TV 또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법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본다	①	②	③	④	⑤

위의 설문은 법을 인식하는 경로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이 질문을 향후의 법외식조사에서도 계속 물어보자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최근에는 법률정보의 인식경로를 확인하는 것보다, 어떤 경로에서 효과적으로 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묻을 필요가 있다.

당신은 아래의 매체나 경험을 통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법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얻고 있지 않다.	별로 얻고 있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잘 얻고 있다.	매우 잘 얻고 있다.
TV / 라디오	①	②	③	④	⑤
신문 / 잡지	①	②	③	④	⑤
정부홍보물	①	②	③	④	⑤
학교 / 학원	①	②	③	④	⑤
주위 사람	①	②	③	④	⑤
사건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	①	②	③	④	⑤

또한 인식경로와 함께 국민들의 법에 대하여 어떤 형식의 기사에 관심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설문지로 구현될 수 있다.

당신은 TV/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는 다음의 기사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노동자나 기업의 법적 요구	①	②	③	④	⑤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	①	②	③	④	⑤
국회에서 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①	②	③	④	⑤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판결	①	②	③	④	⑤

5) 법과 사회정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이 헌법상 가치들인 차별의 시정과 소수자 보호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법률로서 모든 사회적 부정의가 해소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정의는 법의 이념이어야 한다는 점은 쉽게 긍정할 수 있다.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문2) ○○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2.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 3.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문2-1) (문2)에서 ‘1,2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3.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 4.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5.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4) 최근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탈북자) 등이 국내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1. 전적으로 찬성한다
- 2. 찬성하는 편이다
- 3. 반대하는 편이다
- 4. 전적으로 반대한다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 설문 중에서>

문9. ○○님은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②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 ③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 문9-1로 가시오)

문9-1. (문9에서 ‘1, 2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②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③ 사회적 배려 또는 정부의 관심 부족
- ④ 국민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⑤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⑥ 기타 ()
- ⑦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위에서 보듯이 기존의 설문에는 주로 여성차별이나 소수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존 설문의 취지를 반영하고 차별시정과 분배개선 그리고 소수자 보호라는 사회정의적 관점을 추가해서 새로운 설문을 구성해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법의 기능이나 목적과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지만, 시기적으로 설문당시의 법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시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차별의 시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분배의 개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에 들어 온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성적(性的) 소수자를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외국인 노동자를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법에 대한 이해/교육

법률용어나 법문장은 전문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어문법이나 용어와는 다소 다른 형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법률용어나 법문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의 정도를 묻는 것은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설문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 문19) ○○님은 법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어렵다
 2. 어려운 편이다
 3. 어렵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어렵지 않다

- 문19-1) (문19)에서 ‘1, 2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법조문과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해서
 2. 법 내용이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3.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4. 법에 무관심해서
 5. 기타(적을 것 : _____)

기존의 설문들은 법이해의 어려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물어보았다. 전문가들은 위의 설문들은 법의 이해에 대한 설문인데, 법이 현실생활과 잘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질문과 혼동이 되는 내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던 경험들을 확인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의 어려움을 나누어서 문장들을 단순하게 고쳐서 설문을 구성해보았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잘 모르는 법률내용에 관해서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관련 정보를 찾았지만 잘 이해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법률용어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법률문장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그리고 2008년 설문에서는 법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문으로 조사한 바 있다. 법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법률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적식 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문14) ○○님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잘되고 있다 |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
| 3. 별로 잘 못되고 있다 | 4. 전혀 못 되고 있다 |

문15) ○○님은 법교육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
2.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3.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4.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5. 준법정신의 함양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16) ○○님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법 관련 지식이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도움이 되는 편이다 |
| 3.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문17) 만약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분야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헌법 분야(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조직)
2. 민사 분야(부동산, 금융거래)
3. 형사 분야(각종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
4. 사회복지 분야(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5. 건설·건축 관련 분야
6. 조세 분야(소득세·상속세)
7. 인터넷 관련 분야(전자상거래, 통신비밀보호)
8. 가족법 분야(혼인, 상속)
9. 기타(적을 것 : _____)

법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존 설문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법교육의 충분성 및 학교교육 이외에도 법교육이 필요한지를 물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법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경로 및 쉽게 법률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서 법률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중고 학교교육에서 배운 법률지식은 일상생활에서 법을 이해하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교육 이외에도 법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일상생활에서 법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식정보를 찾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필요한 법률지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필요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필요한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필요한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법생활

국민들의 법적 생활과 관련된 설문들은 하나의 지표로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지표마다 법적 생활과 연관된 설문들을 개발할 필요도 있지만, 법생활 자체로서도 국민들의 기초적인 법인식과 법행동을 알아보는 지표가 된다. 이것은 생활에 밀접한 법률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알아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법생활과 관련된 분야는 주로 민사나 형사 그리고 상법 또는 노동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설문조사에는 주로 형사법분야와 민사법분야 그리고 노동법분야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특히 기존 조사에는 형사정책 관련 설문들의 수가 비교적 많았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

해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법인식 설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졌다.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문24)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5. TV · 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6. 기타(적을 것 : _____)

형사법 관계도 국민들의 중요한 법률생활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의 형식을 바꾸어 보았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의 행동이 필요하다. 아래의 서술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①	②	③	④	⑤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①	②	③	④	⑤
TV, 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①	②	③	④	⑤
범죄자에 대한 교정 등 재교육	①	②	③	④	⑤
범죄자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	①	②	③	④	⑤

또한 범죄 중에서 시급히 없어야 할 범죄의 종류를 묻는 설문도 있었다.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문23)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어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부정부패 | 8. 도박사범 |
| 2. 탈세 | 9. 강·절도사범 |
| 3. 부동산투기사범 | 10. 음주운전 |
| 4. 환경사범 | 11. 아동대상범죄 |
| 5. 성폭력 | 12. 가정폭력 |
| 6. 조직폭력 | 13. 기타(적을 것 :) |
| 7. 마약사범 | |

시급히 없어야 할 범죄를 고르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설문은 유지여부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그리고 형사정책적으로는 범죄형량의 조정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설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즉, 성범죄 및 기업범죄 등 범죄의 종류별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형벌이 낮은지 또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는지도 기초적인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형식의 질문지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당신의 아래의 범죄유형에 관해서 지금보다 처벌이나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무원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①	②	③	④	⑤
선거범죄	①	②	③	④	⑤
기업에서의 탈세 관련 범죄	①	②	③	④	⑤
기업에서의 배임이나 횡령에 관한 범죄	①	②	③	④	⑤
기업에서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①	②	③	④	⑤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	①	②	③	④	⑤
환경훼손관련 범죄	①	②	③	④	⑤
성범죄	①	②	③	④	⑤
마약범죄	①	②	③	④	⑤
도박범죄	①	②	③	④	⑤
명예훼손	①	②	③	④	⑤
소년범죄	①	②	③	④	⑤

이와 함께 몇 가지 중요한 노동 관련 법주제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설문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보호에 성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노사관계법은 잘 지켜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저(低)임금 노동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사치관의 변화와 법적 현안

그 때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환기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현안적인 법적 문제들을 설문으로 구성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이 설문에서는 부정청탁방지법, 성매매, 양심적 병역거부 등 중요한 입법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현안적인 질문들에 대한 국민법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밖의 여러 현안적인 주제들을 보면 생명권 관련 사형죄, 표현의 자유 관련 인터넷 실명제와 국방의 의무 등 기본권과 헌법상의 의무 관련 주제들이 있었으며, 성매매와 간통죄 등 국민들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는 성윤리 등에 관한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문제들은 입법이나 판례 등 법률관련정책이나 판단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런 주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나 인식을 확인하는 것도 법의식 설문조사가 갖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국민들의 가치관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각 지표와 연관 지어서 법의식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는 법적 현안에 관한 부분을 하나의 지표로 남겨놓아서 중요 법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는 사형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등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한 설문도 있겠지만, 단편적인 질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단편적

인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현안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한다는 차원에서는 관련 법현상의 의미와 연관 지어서 하나의 지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난민문제 및 난민문제로 촉발된 이슬람에 대한 혐오 등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문제들이 현안 지표에서 설문으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의 정도나,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법제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개정’과 ‘재판거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법치주의지표와 관련된 중요한 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투(metoo)운동’에서 보듯이 여성범죄에 대한 대처와 일부 극악한 소년범죄로 인한 ‘소년법 개정’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현상은 사회적 가치관의 변동을 보여주는 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별로 이러한 법적 현안사건들을 관련 지표와 연관지어서 새로운 설문으로 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법치주의 지표

법치주의의 기본적 요소는 권력의 법적 통제, 기본권 보호, 부패의 방지, 법률 준수 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단순히 법에 의한 지배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정의로운 법의 지배라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성격에 맞게 지표와 설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1) 국가의 기본권 보호

2015년 설문은 기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다. 신체의 자유, 청원권, 종교와 사상의 자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을 묻고 있다. 이러한 병렬적 설문 형식은 각 기본권의 보호정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기본권이 가장 잘 보장받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 설문 중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6. 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7. 법은 국민이 이익을 제기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8. 법은 국민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9. 법은 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40. 법은 국민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41. 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이러한 설문내용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단순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과 운영은 다른 차원이라는 점에서 운영에 대한 질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규정과 운영의 차이에 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 다만, 법치주의 관련 설문은 법률조문의 존재 및 수준뿐만 아니라 법운용 현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법제도와 운영의 문제를 분리하여 물어볼 수도 있으며, 또는 총체적인 기본권 보장수준에 대한 국민의 경험을 물어 본다는 점에서 이를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기본권 보장 여부는 법치주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하나의 지표로 구성하여 설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설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해 보았다.

기본권 보호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각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된 설문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중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민, 언론, 정당 및 기업이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수 종교 및 소수자들에 대한 집

회나 행사의 자유를 물어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등한 보장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청원권 및 참정권, 노동권, 재산권 등의 보장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통하여 기본권 보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국민은 자유롭게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언론(TV, 라디오, 신문 등)은 자유롭게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정당은 자유롭게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업은 자유롭게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국민은 사회적 문제에 관해서 자유롭게 청원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소수 종교도 자유롭게 집회나 행사를 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도 자유롭게 집회나 행사를 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국민은 자유롭게 투표권과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노동자는 실제로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적재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재산권은 소유와 행사를 보장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권한의 통제

정부권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는 그 국가의 법치주의 수준을 판별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의 여러 기관별로 법 준수에 관한 설문들이 기존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권한의 통제는 바로 법 준수의 문제이다.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법 준수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 모두의 문제라 할 것이다.

기존의 국가권력 제한과 관련한 설문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치 분야에 부패의 방지, 선거법 준수 등 일부 사항에 한정되어 있었다.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 설문 중에서>

문40)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치부패를 줄이고 정치의 투명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전선거운동
2.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3. 당내경선 및 정당공천
4. 기타(적을 것 : _____)

문41) ○○님은 우리 사회에서 선거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 잘 지켜지는 편이다
3.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41-1) (문41)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선거법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2. 선거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3. 선거사범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4. 유권자의 의식이 낮기 때문에
5. 기타(적을 것 : _____)

일부 설문은 사법의 공정성, 특히 재판에서의 법준수를 물었다. 특히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생각을 물었다.

<이세경·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문8) ○○님은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 | |
|----------------|----------------|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2. 동의하는 편이다 |
|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문29) ○○님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영향을 미친다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 설문 중에서>

문30) ○○님은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바람직하다
- 2. 바람직한 편이다
- 3.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3.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이러한 설문들은 주로 사법부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를 확대해서 행정부 및 국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나누어서 국가권력의 통제에 관한 질문들을 구성해 보았다.

먼저 정부에 대한 설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예시한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부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제된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권한은 국회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권한은 언론에 의해서 견제된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권한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견제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정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기관 및 국민들로부터 통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설문을 나누어서 재정 및 법률안에 대한 정보공개로 통하여 법적 통제와 함께 투명성에 관한 질문도 필요하다. 국내외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정보공개와 투명성은 정부권한 통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규제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효과적인 처리도 정부권한 통제의 실질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권한 남용 및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통한 권한의 통제 등을 세부적인 설문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부의 재정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행정정보는 국민에게 잘 공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에 대하여 국민은 자유롭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의신청은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감사원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합법성 통제와 함께 이의신청 등이 효과적으로 처리되는지에 관한 효과성 통제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국가에서 규제에 대한 효과성은 결국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이는 척도가 된다.

3) 국회의 민주성과 신뢰성

기존 조사에서는 국회에 관련된 설문은 선거법 준수나 부패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기에 새롭게 일반적인 국회 활동에 대한 설문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국회는 법률안과 법률심의를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국회의 법률안에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국회의 법률안에 기업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국회의 법률안에 소수자 보호의 가치가 잘 반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국회의 예산심의에 국민 전체의 이익이 잘 반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국회의 예산심의에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의 이익이 잘 반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국회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안에 국민의 이익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지, 예산심의에서 국민전체의 이익이나, 지역의 이익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의회는 국민전체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을 뽑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대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게 하고, 향후의 입법이나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4)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와 관련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법치주의 요소이다. 기존설문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된 설문들이 있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법부의 활동이나 독립성을 알아볼 수 있는 세부적인 설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문8) ○○님은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2. 동의하는 편이다
-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29) ○○님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영향을 미친다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관이 헌법 및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지와 권력과 기업 등의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는 사법부 독립에 관한 지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문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민여론과 재판의 관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재판이 국민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결과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민인식조사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법관은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법관은 재판에서 정의로운 법률의 발견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법관의 재판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법관의 재판은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법원의 재판은 국민여론으로부터 독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국민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법 준수

기존의 법준수는 개인과 사회를 분리해서 설문을 구성하였다. 즉, 개인의 법 준수를 물어 본 이후에 사회의 법 준수를 물어보고 양자를 비교하였다. 사회의 법준수와 관련하여

여 한국의 법치주의 문화 중 옳지 못한 것으로 이른바 ‘때법’이 지적되고 있는 경우가 흔하게 많다. 다만 이러한 현상의 결과에 관해서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결과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문22) ○○님은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잘 지킨다 | 2. 잘 지키는 편이다 |
| 3.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지키지 않는다 |

문22-1) (문22)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법을 잘 몰라서
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7. 기타(적을 것 : _____)

문7) ○○님은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다니까?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

문18) ○○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6. 기타(적을 것 : _____)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意識조사 설문 중에서>

문5. ○○님은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지킨다
- ② 잘 지키는 편이다
- ③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지키지 않는다
- 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 문5-1로 가시오)

문5-1. (문5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법을 잘 몰라서
- ②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③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④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⑥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⑦ 기타 ()
- ⑧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이처럼 나의 법준수와 사회의 법준수를 비교하는 설문은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서 반복되어 왔다. 나와 사회와의 비교를 확장하여, 법준수에 대한 설문은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법에 대한 미준수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를 응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意識 조사연구 설문 중에서>

문21) ○○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2. 잘 지켜지는 편이다
- 3.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문21-1) (문21)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법을 잘 몰라서
- 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7. 기타(적을 것 : _____)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 설문 중에서>

문4. ○○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② 잘 지켜지는 편이다
- ③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4-1. (문4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을 잘 몰라서
- ②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③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④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⑥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⑦ 기타 ()
- ⑧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4.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문35.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위의 마지막 설문과 관련해서, 사회의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의 법준수에 대한 질문을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각 직업별, 또는 기업의 크기별로 법준수 여부를 물어볼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범주에서 법준수 여부를 물어보려는 시도를 구상하였다.

사회란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공동체, 지역공동체 등 여러 구성단위를 전제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주로 기업과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법준수 여부를 묻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에서의 행태는 구분되고 있다. 기업과 대척점에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법준수 여부를 묻는 것도 그동안 노동문제를 금기시 해 온 우리 사회의 법적 현상들을 파악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행동은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언론에 비친 노동조합의 모습은 사실과 상관없이 다소 부정적이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아래의 설문이 다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국민 상당수가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법준수에 대한 국민인식을 묻는 질문은 법정정책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대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중소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상인(商人)들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노동자는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노동조합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는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경찰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검찰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국회는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법원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은 지문을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볼 수 있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는 개인들의 이익을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이익설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만약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법이란 일정한 법성(法性)을 지녀야 하는데, 법 제정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법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며, 법률이 잘못 운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험이나 제도상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나 정부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법률미준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이 다른 사회규범인 도덕과 윤리 또는 개인적 양심과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들은 법을 안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법을 수용(受容)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모두 법에 대한 미준수 이유가 될 수 있다. 흔히 ‘때법’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질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원인이 법제도나 국가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 미준수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 미준수의 이유에 관한 질문은 국민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기관으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법을 모르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 제정 절차에 잘못이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이 도덕에 어긋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당신은 아래의 문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법이 윤리에 어긋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이 양심에 어긋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을 지키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른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법의식조사 연구를 계승하여 국민들이 갖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입법정책 자료를 만들어 왔다.

초기의 법의식조사는 전통적인 의식과 서양으로부터 계수한 서양식 법률문화와의 괴리를 조사하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러한 연구를 이어 받아 국민의 법률 및 법 준수 인식뿐만 아니라 여러 법적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하였다.

법의식조사의 미래는 국민들의 법에 대해 갖고 있는 기초적인 인식조사라는 역할과 함께 좋은 정부와 좋은 국가의 법이란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정착과 함께 실질적인 법치주의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법의식조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법이 국가권력을 통제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들이 법을 통하여 실현되는 이상(理想)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바로 국민 법의식조사라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다양한 법치주의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의 목표는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따라 기존 지표들과 그에 속한 설문들을 새롭게 구상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표와 설문들의 예시를 작성해 보았다. 향후에 실제로 이루어질 국민법의식조사나 전문가법의식조사에서는 마도 실제적인 지표와 설문들이 외국의 다양

한 사례들을 참고삼아 작성될 필요가 있다.

기초적인 법의식조사를 위한 설문과 법치주의 관련 설문을 분리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표를 통해서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진단하도록 하는 지표설계 방향이 보다 건설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기초법의식조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의 목적, 기능, 성격 등의 기초 법적인 내용을 지표로 하여 법에 대한 일반적 생각과 정서를 알 수 있도록 하며, 법치주의 설문은 권력의 통제와 기본권 보호 및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정부의 법 준수 현안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다.

법의식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적 현안지표에서는 다양한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법제도를 통한 국가정책 실현에 대한 국민적 경험이 지수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설문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대 국가에서 법률이란 사람 몸의 혈액과 같이 국가의 권한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중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는 관련 법률의 집행과 효과에 대한 지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실적을 알리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을 다시 법의식조사로 모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법의식조사는 민의(民意)에 따른 정치와 행정 이루어지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길곤·박세나, 국가경쟁력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 김도균·최병조·최종고, 『법치주의의 기초 : 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박상철 외 2인,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 박영도·최성한·손희두,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법무부·국정홍보처, 『법교육 강화를 한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연구』 (조사연구: 월드 리서치), 2007.11.
- 양승두, “한국법문화시론 (Ⅲ) : Ⅱ. 한국의 역사 단과 법문화 (2)”,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연성진, 『법의식의 실태 법운동의 개방향에 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연성진, 『법질서 확립을 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법무연수원, 2008.
- 염유식, “한국 법의식 조사에 대한 연구 방법론 검토 -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 『법과사회』 제37호, 2009.
- 이근식·손주찬·양승두·이형국, “한국인의 법의식과 법정신의 제고방 안에 한 연구 -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 『새마을운동 연구 논총』, 새마을연구회, 1982.

- 이상영 · 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06, 10면.
-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에 한 사회학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4.
- 전택수 외 6인, 선진경제 진입과 법치원리 확립 - 이상과 실 -, 백산서당, 2005.
- 정소영, “한국의 법의식 조사와 미국의 rule of lawindex의 비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6권 제1호, 2016.
- 차용석 · 최종일 · 장주, “한국인의 법의식에 한 조사연구 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6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 한국법교육센터,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법무부, 2007.
-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 현대호 · 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 황승흠, “법의식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 - ‘법태도 조사’를 중심으로 -”, 『법과사회』 제37호, 2009.
- 황승흠, 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2010.

□ 외국문헌

- Earl Babbie 저, 고성호 외 10인 옮김, 사회조사방법론 13판, CENGAGE, 2018.
- José María Maravall and Adam Przeworski 외 저, 안규남 · 송호창 외 옮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2008.

Klaus Schwab, Insight Report,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World Economic Forum, 2017.

Klaus Schwab, Insight Report,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World Economic Forum, 2018.

Klaus Schwab, World Economic Forum, Editor, Executive Opinion Survey 201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2019, World Economic Forum, 2018

The United Nations, Rule of Law Indicators - Implementation Guide and Project Tools,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1.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4』, 201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2015.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7-2018』, 2018.

□ 인터넷 사이트

World Just Project 사이트, <https://worldjusticeproject.org/> 최종방문일 2018.11.1.

World Economic Forum 사이트, <https://www.weforum.org/about/world-economic-forum> 최종방문일 2018.11.1.

“한국 국가경쟁력 140개국 중 15위…ICT·거시경제 1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년10월17일 수정, 2018년11월1일 접속,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4743&call_from=nave_r_news.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한국 인권 어디까지 왔나”, 한겨레, 2018년4월10일 수정,
2018년11월1일 접속,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405756>.

“칸막이 규제에 싹잘리는 신성장...‘틀’ 혁신해야 살릴수 있다”, 문화일보, 2018년8월13
일 수정, 2018년10월15일 접속,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130107030332500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부 록

2		'법'에 관한 기본적 인식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일반	1	인식	1	느낌	1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2 법에 대한 인식/정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6.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문27.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8.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29.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0. 주위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5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3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2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3		‘법’을 인식하는 경로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일반	1	인식	1	경로	2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2008						
문9) ○○님은 생활법을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연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2. 인터넷 3. 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4. 정부홍보물 5. 주위 사람 6. 학교 7. 기타(적을 것 : _____)						
2015						
문2. ○○님은 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연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2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② 인터넷 ③ 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④ 정부 홍보물 ⑤ 주위 사람 ⑥ 학교 ⑦ 기타 () ⑧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Check		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2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3	3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2	2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8	13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부			

4		뉴스 등 관심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세분류)			
법일반	1	인식	1	경로	2	뉴스관심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2008									
문10) ○○님은 뉴스에 보도되거나 신문에 실리는 판결에 관한 기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매우 관심이 있다 2. 관심 있는 편이다 3. 관심 없는 편이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1. TV 또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4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12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부			

5		법에 대한 이해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세분류)
법일반	1	인식	1	이해	3	일반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p>문20) ○○님은 본인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잘 아는 편이다 3. 모르는 편이다 4. 전혀 모른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6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1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8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6 법개정에 대한 관심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세분류)
법일반	1	인식	1	이해	3	법률 개정 관심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2.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법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4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2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7 '계약서' 등의 속지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법일반	1	인식	1	속지	3	계약서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2008						
문13) ○○님은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매우 자세히 읽는다 2. 대충 읽는다 3. 별로 읽지 않는다 4. 전혀 읽지 않는다						
2015						
문3. ○○님은 보험이나 펀드를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① 매우 자세히 읽는다 ② 대충 읽는다 ③ 별로 읽지 않는다 ④ 전혀 읽지 않는다 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3	4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3	3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3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2	2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2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8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9		법의 필요성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일반	1	필요성	2	일반	1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p>2008</p> <p>문6) ○○님은 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반드시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p> <p>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p> <p>문6-1) (문6)에서 ‘1,2번’ 응답자에게만</p> <p>그럼, 법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국가의 통치를 위하여 2.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p> <p>3. 분쟁해결을 위하여 4.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p> <p>5. 기타(적을 것 : _____)</p>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5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3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0		필요한 법의 인지요부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일반	1	필요성	2	일반	1	인지여부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4.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4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1 법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일반	1	기능		일반	1	인지여부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5 법의 실효성 보장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42.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문43. 법은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인다				①	②	③	④	⑤
문44. 법은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인다				①	②	③	④	⑤
문45. 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46. 법은 정부 권한을 통제(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5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2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2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2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일반	1	공정성	4	일반	1	인지여부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⑥ 법의 제정/집행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47. 국회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문48. 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49. 정부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50.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4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2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4		소송에 대한 인식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일반	1	서비스	5	소송	2	인식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2008								
문12) ○○님은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바람직하다 2. 바람직한 편이다								
3.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3.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2	6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3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7	11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5		초중고 법교육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법일반	1	교육	6	일반	1	초중고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14) ○○님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우 잘되고 있다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3. 별로 잘 못되고 있다 4. 전혀 못 되고 있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4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6		초중고 법교육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법일반	1	교육	6	일반	1	초중고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15) ○○님은 법교육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 2.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3.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4.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5. 준법정신의 함양 6. 기타(적을 것 : _____)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6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2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2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8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7		초중고 법교육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법일반	1	교육	6	일반	1	초중고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16) ○○님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법 관련 지식이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되는 편이다						
3.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2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8		법교육 필요 분야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법일반	1	교육	6	일반	1	필요분야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17) 만약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분야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 분야(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조직) 2. 민사 분야(부동산, 금융거래) 3. 형사 분야(각종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 4. 사회복지 분야(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5. 건설·건축 관련 분야 6. 조세 분야(소득세·상속세) 7. 인터넷 관련 분야(전자상거래, 통신비밀보호) 8. 가족법 분야(혼인, 상속) 9. 기타(적을 것 : _____)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2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3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4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3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3	3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2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11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20		정치부패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치주의	2	국가	1	국회	1	부패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40)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치부패를 줄이고 정치의 투명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선거운동 2.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3. 당내경선 및 정당공천 4. 기타(적을 것 : _____)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8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5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2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22		김영란법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치주의	2	국가	1	정부	2	김영란법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문19.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을 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이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님은 ‘김영란법 도입’이 공직사회부패 방지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성과가 있을 것이다 ② 대체로 성과가 있을 것이다 ③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다 ④ 전혀 성과가 없을 것이다 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2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23		정부와 지자체의 법준수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치주의	2	국가	1	정부	2	법준수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1.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문32.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15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	2	
3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3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24	유전무죄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치주의	2	국가	1	사법부	3	유전무죄/권력재력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8) ○○님은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29) ○○님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영향을 미친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25		여론재판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치주의	2	국가	1	사법부	3	여론재판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30) ○○님은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바람직하다 2. 바람직한 편이다 3.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3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4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4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2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1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26		법원의 법준수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치주의	2	국가	1	사법부	3	법준수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3.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2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2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28		나의 법준수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치주의	2	국민	2	개인	1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p>2008</p> <p>문22) ○○님은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매우 잘 지킨다 2. 잘 지키는 편이다</p> <p>3.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지키지 않는다</p> <p>문22-1) (문22)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p> <p>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법을 잘 몰라서</p> <p>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p> <p>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p> <p>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p> <p>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p> <p>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p> <p>7. 기타(적을 것 : _____)</p> <p>2015</p> <p>문5. ○○님은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잘 지킨다</p> <p>② 잘 지키는 편이다</p> <p>③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p> <p>④ 전혀 지키지 않는다</p> <p>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 (문5-1로 가시오)</p> <p>문5-1. (문5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법을 잘 몰라서</p> <p>②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p> <p>③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p> <p>④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p> <p>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p> <p>⑥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p> <p>⑦ 기타 (_____)</p> <p>⑧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p>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1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5	6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29		악법도 법이다.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치주의	2	국민	2	개인	1	악법도 법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7) ○○님은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4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2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3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30		법준수와 생활의 관계.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법치주의	2	국민	2	개인	1	법준수와 생활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18) ○○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6. 기타(적을 것 : _____)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3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31		뺑소니 신고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법치주의	2	국민	2	개인	1	뺑소니 신고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25) ○○님이 뺑소니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당연히 신고한다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5. 기타(적을 것 : _____)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2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32		분쟁해결방식 인식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치주의	2	국민	2	개인	1	왕따해결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28) 최근 학교 내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님의 자녀가 이러한 집단따돌림을 당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학생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2.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						
3.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4.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다						
5. 기타(적을 것 : _____)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2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2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5.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3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6	12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34		기업의 법준수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법치주의	2	국민	2	사회	1	기업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4.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2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35		여성차별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헌법	3	기본권	1	평등	1	여성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2) ○○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2.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3.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문2-1) (문2)에서 ‘1,2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2. 여성의 권리인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3.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4.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5.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6. 기타(적을 것 : _____)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4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5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2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36		군가산점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평등	1	군가산점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p>2008</p> <p>문3)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 님은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p> <p>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p> <p>2015</p> <p>문14.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 님은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p> <p>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③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p>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2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3	4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5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37		외국인 등 사회통합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참고 (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평등	1	외국인 등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4) 최근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탈북자) 등이 국내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3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2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39		안락사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생명신체	2	안락사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2008						
문36) ○○님은 안락사 허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015						
문13. ○○님은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③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⑨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3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3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	13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40		사형제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생명신체	2	사형제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2008						
문37) 우리나라는 법률상에는 존재하지만 과거 10여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님은 사형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2015						
문15.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과거 10여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님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③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⑨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3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1	1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14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41		신체의 자유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생명신체	2	신체의 자유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6. 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4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3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3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42		표현의 자유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표현의자유	3	일반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40. 법은 국민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3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2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43		인터넷실명제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표현의자유	3	인터넷실명제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35) ○○님은 인터넷 실명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Check	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2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45	성매매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행동의자유	4	성매매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문17. 최근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님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③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3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2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46		청원권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청원권	5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7. 법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6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4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2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47		종교와 사상의 자유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종교사상	6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8. 법은 국민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6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3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2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48		참정권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참정권	7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9. 법은 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7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49		재산권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기본권	1	재산권	7	일반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15						
201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41. 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Check	실문내용 체크리스트	
'15		
6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4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50		헌법기능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헌법일반	3	헌법기능	1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38) 다음은 헌법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님은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1	2	3	4	
㉡공동체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법		1	2	3	4	
㉢약자 보호를 위한 법		1	2	3	4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분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51		헌법가치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세분류)
헌법	3	헌법일반	3	헌법가치	2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39) ○○님은 우리 헌법에서 어떤 점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의 자유와 평등 2.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 3. 국가에 대한 국민(개인)의 책임과 의무 4. 국민(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 5. 기타(적을 것 : _____)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3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4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52		거래생활 불량식품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민사	4	거래	1	불량식품	1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p>2008</p> <p>문26) 만약,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p> <p>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4. 손해배상을 받아낸다</p> <p>5. 기타(적을 것 : _____)</p>						
<p>2015</p> <p>문6. ○○님은 만약,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①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②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p> <p>③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④ 손해배상을 받아낸다</p> <p>⑤ 기타 () ⑨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p>						

Check		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3	3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1	1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6	14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53		손해배상 인식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민사	4	거래	1	손해배상	2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27) 만일, ○○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해자가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2. 치료비만 받는다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받는다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4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2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1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54		가족공동체의 의사결정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민사	4	가족	2	의사결정	1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2008						
문1) ○○님의 가정에서는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로 누가 합니까?						
1. 아버지(남편)		2. 어머니(아내)				
3. 부모(부부) 공동의사		4. 가족 모두				
5. 자녀		6. 기타(적을 것 : _____)				
2015						
문11. ○○님의 가정에서는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로 누가 합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남편		
④ 아내		⑤ 부모 공동 의사		⑥ 부부 공동 의사		
⑦ 자녀		⑧ 가족 모두		⑨ 기타()		
⑩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1	1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2	2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10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55		시급히 없어야 할 범죄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형사	5	범죄일반	1	범죄대책	1	대상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23)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어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부정부패 8. 도박사범 2. 탈세 9. 강·절도사범 3. 부동산투기사범 10. 음주운전 4. 환경사범 11. 아동대상범죄 5. 성폭력 12. 가정폭력 6. 조직폭력 13. 기타(적을 것 :) 7. 마약사범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2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56		범죄대책 정책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형사	5	범죄일반	1	범죄대책	1	정책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				
2008						
문24)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6. 기타(적을 것 : _____)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1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2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57		환경오염 기업책임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행정	6	환경	2	책임	1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p>2008</p> <p>문43) ○○님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2. 벌금형보다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4. 기타(적을 것 : _____) 						
<p>2015</p> <p>문8. ○○님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② 현행 법령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④ 기타 (_____) 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1	3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2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2	2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2	2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1	1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6	9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58	노사관계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비고
노동	7	노사관계	1			
문항개설		문항이용		문항수정		기타
		2008/2015				
<p>2008</p> <p>문42) ○○님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 잘 지켜지는 편이다 3.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p> <p>문42-1) (문42)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p> <p>그럼,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사업주 2. 근로자 3. 정부 4. 기타(적을 것 : _____)</p> <p>2015</p> <p>문7. ○○님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② 잘 지켜지는 편이다 ③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1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 (☞ 문7-1로 가시오) 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p> <p>문7-1. (문7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사업주 ② 근로자 ③ 정부 ④ 기타 () ⑤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p>						

Check		설문내용 체크리스트	
'08	'15		
2	2	1	문항의 용어 및 질문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1	1	2	문항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3	문항이 내용상 둘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경우
1	1	4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른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경우
		5	문항이 일반인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문항이 편견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	문항이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문항의 형태(자유응답/다지선다/양자택일/점수/복수응답 등)가 부적합한 경우
		9	문항 내 보기의 순서 등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6	16	*	2019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입법평가 연구 18-15-⑥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2018년 11월 13일 인쇄
2018년 11월 15일 발행

발행인 | 이익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8,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07-9 93360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 788966 849079

ISBN 978-89-6684-907-9

값 8,000원